

정책연구 2014-21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조경엽 · 강동관



정책연구 14-21

2014. 12.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조경엽 · 강동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경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공저, 2013),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0),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공저, 20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1),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공저,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공저, 2009),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공저,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공공경제, 2007), 「2003~2005년 세계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공공경제, 2006), 등이 있다.

강동관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경제학, 자원환경경제학 등이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BK21에서 근무했으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위원을,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전임강사를, 법무부에서 외국인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재정정책학회에서 편집위원장을,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1판1쇄 인쇄 | 2014년 12월 26일

1판1쇄 발행 | 2015년 1월 5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8031-715-8

10,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00670)

CONTENTS

요 약	7
제1장 서론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 목적	34
3. 연구 범위	35
4. 연구 방법	35
제2장 이민의 이론과 실제	37
1. 이민의 이론적 분석	37
2. 실증분석 사례	39
3. 소결	44
제3장 이민의 국내외 현황	46
1. 해외의 이민	46
2. 국내의 이민	52
제4장 이민의 경제적 효과 분석	80
1. 분석방법	80
2. 이민 규모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83
3.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이민 규모 추정	87
4. 이민 규모의 단계적 목표치 설정	92
5. 소결	97
제5장 결어 및 시사점: 이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99
1. 단순인력제도의 개선	99
2. 단순기능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의 정책 중심 전환	100
3. 국내 전문인력 제도의 개선	101
4. 국내연구의 활성화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07

[표 2-1] 비숙련 및 숙련 근로자의 도입에 의한 거시경제효과	40
[표 2-2] 영주권자의 재정 순잉여(손실)효과	42
[표 2-3] 대체탄력성에 대한 연구결과	43
[표 3-1] 세계 총이민자 수와 총인구	46
[표 3-2] 이민자 비율과 목적국의 평균 GDP	48
[표 3-3] 기술수준별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1983~2000)	49
[표 3-4] 국제 이주 현황	51
[표 3-5] 직종별 인력부족률	55
[표 3-6]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	55
[표 3-7] 산업기술인력 현원·부족인원	56
[표 3-8] 일본 및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57
[표 3-9] 노인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 전망	58
[표 3-10]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59
[표 3-11] 체류자격 유형	63
[표 3-1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64
[표 3-13] 취업자격 체류 이주자 총괄 현황	65
[표 3-14] 자격별 현황	65
[표 3-15] 비자별 외국인의 경제활동	66
[표 3-16]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인원 결정 내역	69
[표 3-17]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E-9) 추이	70
[표 3-18] 방문취업제 쿼터(quota) 변화 현황	72
[표 3-19] 방문취업제 국적별 체류현황	73
[표 3-20] 전문인력 사증종류 및 현황(2014년 6월 말 기준)	76
[표 4-1] 사회회계행렬(2013년)	81
[표 4-2]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소득비중 및 생산성	82
[표 4-3] 이민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	83
[표 4-4] 시나리오별 총공급 변화	85
[표 4-5] 기준시나리오 대비 잠재성장률 변화	86
[표 4-6] 시나리오별 거시지표 변화	87
[표 4-7] 기준성장률과 목표성장률	88
[표 4-8]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해 필요 이민자 수	88
[표 4-9] 잠재성장률 1%p 제고에 따른 거시지표 변화	91
[표 4-10] 잠재성장률 1%p 제고에 따른 가격 변화	92
[표 4-11] 목표 생산가능인구 수 달성을 위한 필요이민자 수	93
[표 4-12] 이민 목표 설정에 따른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95
[표 4-13] 이민 목표 설정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95
[표 4-14] 이민 증가에 따른 노년부양비 변화(노인 수/생산가능인구 100명)	97

[그림 2-1] 노동의 수요 공급과 균형 및 잉여	37
[그림 3-1] 각국의 GDP와 이민자 비율	52
[그림 3-2] 연령별 인구(1960~2060)	53
[그림 3-3]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	53
[그림 3-4] 체류 이주자 추이	61
[그림 3-5] OECD국가와 한국의 체류 이주자 수 비교	61
[그림 3-6] OECD국가와 한국의 체류 이주자 비율 비교	62
[그림 3-7] 2002년~2014년 단순기능인력 국내 체류 현황	69
[그림 3-8] 외국인 전문인력 추이	76
[그림 4-1]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82
[그림 4-2] 기준균형 대비 총공급 변화	86
[그림 4-3]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8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 노동공급확대가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이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와 자본에 의존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유입이 요구되고 있음.
- ▶ 저출산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도 이민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60년의 사회적 부양비는 101명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 ▶ 더불어 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의 둔화 유발 예상
- ▶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 한 나라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본, 금융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자연자원 및 환경 등 경제의 주요 자산이 왜곡됨이 없이 상당히 균형적 성장률로 증가되어야 함.
 - 물질적 자본의 축적이 인적자본의 증대 및 시장개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2. 연구 목적

- ▶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로 인해 생산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국내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이민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연구로서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민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민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민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목표치로 하여 수용가능한 단계적 이민 규모 제시

제2장 이민의 이론과 실제

- ▶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임.
 - 긍정적인 측면은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고용기회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임.
- ▶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더라도 그 대체 수준은 낮음[Grossman (1982), Borjas(1986); Butcher and Card(1991), Lalonde and Topel(1991a, 1991b)].
 -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내국인 근로자의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성 여부 및 기타 요인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대체 수준은 낮음.
 -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숙련자일수록 노동대체 탄력성은 낮고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 이민자가 숙련자일수록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높으며, 이주자의 본국의 GDP, 즉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가재정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거

시경제적 효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등 경제 각 부분의 상호작용의 최종결과로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는 유입국의 국민들이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긍정적 효과) 및 조세 효과(소득세 및 간접세 증대)가 있음.
- 반면, 불법체류, 범죄 단속을 위한 행정력의 추가적 비용(부정적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의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 비용(부정적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용에 의한 추가적 혼잡비용(부정적 효과)이 존재

제3장 이민의 국내외 현황

1. 국외 이민

(1) 국외 이주 증가 배경

▶ 이주의 보편화

- 이미 이민은 어느 나라의 특수화 된 현상이 아니라, 이미 보편화된 현상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

- 세계화와 더불어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각국 간에 존재하던 국경의 개념을 허물어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신유목민(digital nomad)을 탄생시키면서 세계 이민 보편화에 공헌

▶ 선진국의 인구환경과 노동시장의 엇박자(mis match)

- 선진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고학력화로 인하여 숙련 부분에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반면, 비숙련 부분에는 노동 부족 현상(노동시장의 엇박자)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의 수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가 간 노동이주로 나타남.

▶ 경제적 부의 획득

- 이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제임.
 -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로 이민이 증가하는 성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경제 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의 증거

(2) 외국의 이민정책 동향

▶ 고숙련자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저출산 경향과 인력불균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에 적극적임.
- 하지만 대부분 전문기술인력 유치에는 적극적이거나 단순기능인력은 단기적 활용에 중점
- 저숙련노동자에 대해서는 제한적 이민 허용
- 고소득국가의 경우 고숙련자 이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저소득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이민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Gross & Schmitt, 2006)

▶ 고령화의 대응수단으로써의 외국인 정책

- OECD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
- 연금, 의료개혁, 사회보장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이 정책의 핵심
 - 2차 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 전후로 은퇴연령에 진입함으로써 고령화가 가속화

▶ 시장수요를 반영한 인력도입

-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민정책을 근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고용허가제(사업주 중심) 또는 노동허가제 중심(개별 근로자 중시)를 근간으로 활용

▶ 자국노동시장 보호

- 외국인력의 채용이 국내 내국인력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시행(예: 동일 노동에 대한 내외국인의 동일 임금)
- 외국인력 정책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관심 증가

(3) 국외 이주 동향

- ▶ 이주통로: 크게 이주를 4개의 이주통로로 볼 수 있으며, 남-남과 북-북이 주요 통로임.

- 남반구에서 남반구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이주가 최대(3.7백만 명)
- 남반구에서 북반구
 - 멕시코에서 미국(12.23백만 명, 전 세계 이주자의 6%)이 최대
- 북반구에서 북반구
 - 독일에서 미국(1.3백 만 명)이 최대
- 북반구에서 남반구
 - 미국에서 멕시코(0.6백 만 명)가 최대

▶ 북반구 인구의 10%~12%를 이주자가 차지, 반면 남반구의 경우 이주자가 남반구 인구의 2%를 차지

- 남반구-남반구 이주를 제외하면 주 이주자는 남성임.
- 송금의 43% 이상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보내짐.

2. 국내 이민

(1) 국내 이주 증가 배경

1) 인구구조 추세와 영향: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변화

▶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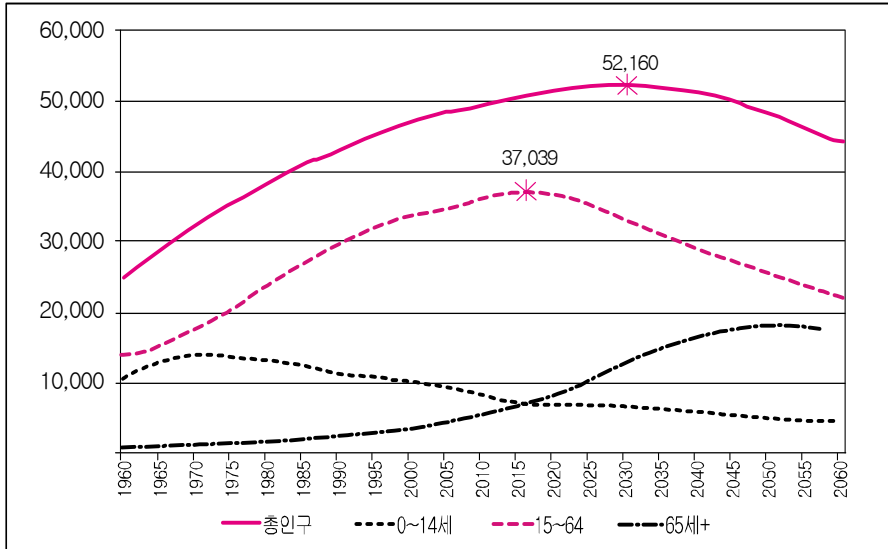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4년 1.19명)
- 총인구는 2013년 현재 5,022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4,396만 명에 이를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2,18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

▶ 2060년,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노인 16.1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 2060년 101.0명(노인 80.6명)으로 부양인구가 더 많아짐.

연령별 인구(1960~2060)

(단위: 천 명)



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2) 인력부족과 노동수급의 엇박자

▶ 산업구조의 변화

- 후발 개도국의 부상과 추격, 제조업의 공동화 및 탈공업화, 산업 간의 격차 심화. 신성장 산업의 출현으로 국내 산업 구조변화가 불가피한 시점
 -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신성장 산업을 중심(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
- 경제의 이중구조(dual structure of economy)화 현상
 - 대기업은 시장 확대를 통하여 성장해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위축과 몰락이 촉진되면서,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노동집약적 3D업종이 일반화
 - 이러한 현상은 만성화·대량화한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는 반면, 기술·숙련 노동력은 부족하여 노동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mis match) 야기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 자사의 인력수급 사정에 대하여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63.6%

- 중소기업의 현재 근무인원은 평균 24.84명이며, 부족인원은 업체당 2.65명(인력부족률 9.6%)
 - 사무직의 인력부족률은 3.0%인데 비해, 생산직의 경우 11.7%로 생산직의 인력부족 현상이 훨씬 심각
 -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유에 대해 인력난 완화라는 응답이 81.3%로 압도적

▶ **산업기술인력 부족**

-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현원은 1,461,902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34.8% 비중을 차지
 -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8,926명, 부족률은 2.6%로 전년대비 0.8%p 하락
 -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제조업이 28,947명으로 74.4% 비중 차지
 - 제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전체 평균보다 소폭 높은 2.7% 기록
- 미충원인원 현황
 -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4,377명으로 나타남.
 - 미충원인원은 72.3%가 제조업에서 발생. 이중 12대 주력산업은 10,649명으로 전체 미충원인원 중 74.1%

(2) 인구구조 변화와 거시경제적 귀결

1) 사회적 부양비 증가

- ▶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과 어린이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01명(노인 80.6명과 어린이 20.5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

2) 잠재성장률 하락

- ▶ **인구구조의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자본이 더디게 축적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0%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겠지만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여 2050년대 후반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
 - 투입요소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87%까지 확대될 전망

- 고령화로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2040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하면서 2051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3) 국내 이주 현황

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이민정책은 제2차 외국인정책이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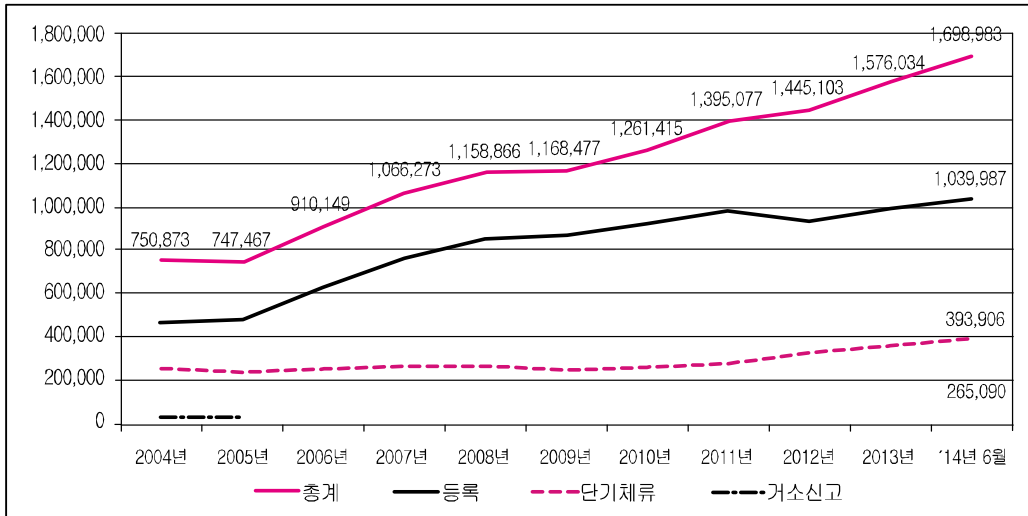
- *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서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정부는 각 부처별로 분산·추진되던 다양한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해 왔음.
- 2012년에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2) 국내 체류 이민자 현황

▶ 2014년 6월 현재 약 170만 명

- 작년 6월 말에 비해 17.6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10여년 전인 2003년의 67.9만 명에 비해 102.0만 명이 늘어난 수치
-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약 9.0%
- 이러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2016년에는 200만 명, 2021년에는 300만 명, 2027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

체류이민자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계, 각 년도

▶ 국내사증 종류는 36개의 기본 분류 하에 160개의 하위 사증이 있음.

-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36개 사증으로 크게 분류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임.
- 취업자격 다음으로 많은 체류이민자 집단은 재외동포(F-4)로 2014년 6월말 현재 267,984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1,637명이 늘어남.

3) 취업자격 이주자 현황

▶ 2014년 6월 말 현재 총 594,460명(합법 524,559명 불법 69,901명)이 국내에 체류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전문외국인력과 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 나누어지는데, 2014년 6월 말 현재 각각 49,524명과 544,936명임.
- 전문외국인력은 1년 전인 2013년 6월 말에 비해 1,074명이 감소: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전문외국인력은 회화지도사증(E-2) 소지자로 2,107명이 감소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전문인력은 특정활동사증(E-7) 소지자로 595명이 증가
- 단순기능외국인력은 1년 전에 비해 64,657명이 증가하였으며, 비전문취업자는 53,508명, 선원취업자는 152명, 방문취업자는 6,542명으로 증가

4) 일반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 근로자

▶ 법적 근거

- 2003년 8월 16일에 제정 공포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시행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4년 3월에 총 79,000명(고용허가제 25,000명, 취업관리제 16,000명, 산업연수제 38,000명)의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 발표하였고, 2004년 8월 31일 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
 - 2003년부터 제조업(E-9-2), 건설업(E-9-3), 농축산업(E-9-4), 냉장냉동(E-9-6), 음식업(E-9-A), 청소업(E-9-B) 등으로 사증이 분류되기 시작하였음.

▶ 대상국가

- 송출국가는 2004년 6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여, 2006년 3개국을 추가(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하였고, 2007년에는 5개국(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 미얀마), 2008년에는 동티모르를 추가함으로써 2014년 6월 말 현재 14개국

▶ 외국인력 허용업종

- 2004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일부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어업이 추가
- 2006년과 2008년에 서비스업분야가 부분적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이후 5개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룸.

▶ 허용취업활동기간

- 2004년 3년 만기 귀환으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5월부터 ‘3년+3년(중간에 1개월 출국)’으로 전환하였고,
- 2009년 12월에 ‘3년+1년 10개월 연장’으로 변경. 2012년 7월에 현재의 재입국제도, 즉 ‘4년 10개월 + 요건충족 시 4년 10개월 추가(중간에 3개월 출국)’ 안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룸.

▶ 작업이동의 조건

- 법에서 규정된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이동은 3회로 제한

▶ 비전문 취업자의 추이

- 2003년에 처음으로 비전문 취업(E-9)에 대한 통계가 시작되었으며, 159,755명이 이 사증을 받음.
- 2003년부터 약 16만 명에 이르는 비전문 취업자에 대한 통계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관련이 있음.
 - 2003년 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 분류되는 비전문 취업비자 소지자가 159,755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총 체류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을 허용함으로써 2년 후인 2005년 비전문취업자의 수는 대폭 감소
- 2014년 6월 현재, 총 체류자는 258,018명으로 고용허가제 시작 연도 2004년의 159,408명에 비해 98,610명이 증가 상태임.

5) 방문취업제도(특별고용허가제도) 하의 재외동포

▶ 법적 근거

-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2002년 11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외동포들을 위한 ‘취업관리제도’이며, 방문취업제도의 시발점
-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시행함에 따라 취업관리제도는 고용허가제에 흡수되었음.

▶ 국내 취업 가능대상자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2003.5.10, 연령 30세로 조정)의 외국국적 동포로 한정

▶ 해외동포 근로자의 추이

- 2002년 겨우 156명에 불과하였던 해외동포의 수가 이듬해인 2003년에 취업관리제도의 시행에 의해 그해에 7,187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86,440명으로 늘어남.
 - 취업관리제도 하의 해외 동포 수는 방문취업제에 시행에 따라 2009년에는 1,054명으

로 감소되었고, 201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짐.

- 2007년 방문취업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 및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사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
- 또한 그 동안 모국 입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던 한국에 친척 등의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게까지 한국 입국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인구도 급증하여 2007년 초기 228,686명에서 제도 시행 불과 2년 만인 2009년에 30만 명을 상회하게 됨.
-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9년 3월에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전체 외국인력 쿼터규모에 포함시키는 사증발급총량제(30.3만 명)를 도입함.

▶ 도입규모 추이

- 2008년의 경우 연고 동포 3만 명, 무연고 동포 3만 명 등 총 6만 명의 책정되었으나, 2009년에 이를 대폭 축소하여 연고 및 무연고 동포를 통합하여 1만 7천명으로 제한
- 법무부에서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민 1인당 초청 가능한 동포 친인척 인원을 1인당 3명으로 한정
- 이어서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인력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2012에는 237,765명까지 감소

6) 전문 외국인력

▶ 국내 전문인력제도

- 많은 나라들이 Green card제, Blue Card제, Point System(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Preference System(미국) 등 이민자 선별 메커니즘을 개발 발전시키려는 추세임.
- 우리나라 역시 우수인재 확보전략과 인구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외국인 전문인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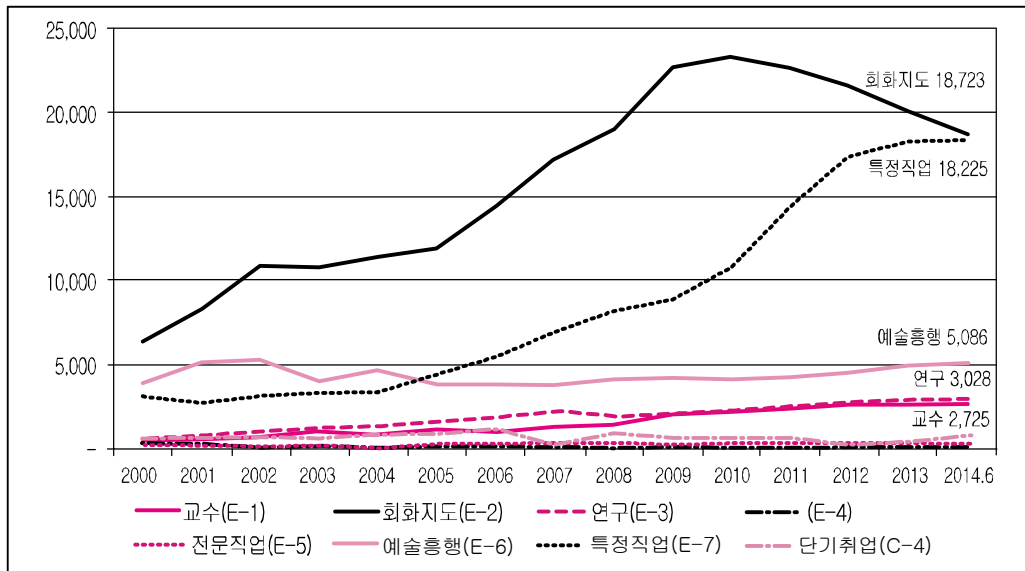
- 법무부에 분류기준에 의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

(E-7)등으로 구분됨.

▶ **외국인 전문인력 현황**

- 2014년 6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외국인력은 49,524명이다. 회화지도와 예술흥행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전문인력은 25,715명이며, 이 중에서 특정활동(E-7)이 18,22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구인력 3,028명, 교수 2,725명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2000년 16,225명이었던 전문외국인력이 2002년 22,610명으로 증가한 뒤 2003년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0,264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하였음.

외국인 전문인력 추이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4) 취업자격 이민제도의 현주소 및 평가

▶ **전문인력의 현주소 및 평가**

-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허용

- 지금까지의 전문 인력정책은 체류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제도개선 실적 대비 우수인재 유치 실적 미흡
 -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음.
- 사증발급 절차 및 연장 등의 복잡성
 - 전문 외국 인력을 채용할 때 어렵게 만든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채용비의 과다와 채용담당 전문인력 및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다음으로 사증 및 출입국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지적함.

▶ 단순인력제도의 현주소 및 평가

-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
 - 단기순환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 정주화하지 않게 함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인력유치정책 지속
 -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계획상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단순기능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재외동포에 대한 쿼터는 2010년부터 303,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포를 우대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
- 단기적인 인력부족상황만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실업률, 유휴인력),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고려 미흡
 - 장기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외국인력 적정규모 추정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행정통계 미비
- 허용취업활동기간의 변경도 국내의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법체류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비판

제4장 이민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방법

(1)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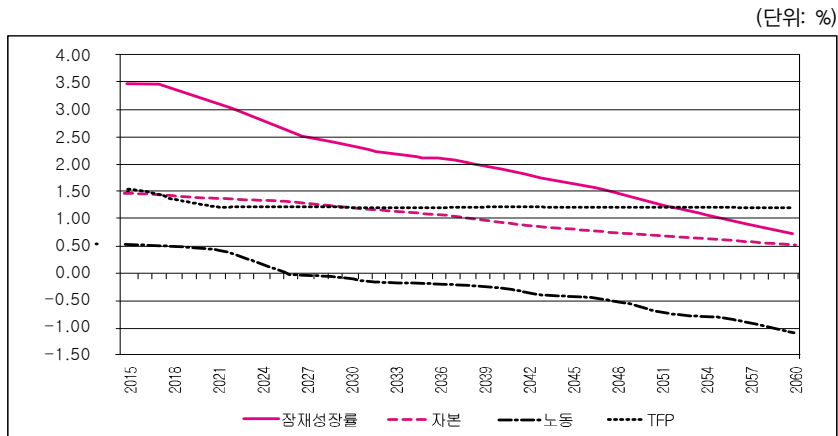
▶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 활용

- 본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CGE 모형을 구축하고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 가계는 소비와 여가를 통해 효용을 얻고 예산제약 하에 시점 간 효용함수(2013년~2016년)를 극대화하는 경제주체로 가정함.
- 산업은 이윤극대화 주체로서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가계와 해외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노동과 자본의 사용대가로 지불한다고 가정함.
- 이민자는 노동을 공급하여 소득을 얻고 이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송금한다고 가정하였음.
- 본 연구는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수입과 지출 행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잠재성장률 장기전망을 이용하여 생산, 노동, 자본의 성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시나리오로 가정하였음.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5년 기간별 장기추계를 저자가 연도별로 전환한 수치임.

2. 이민 규모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1) 분석 시나리오

▶ 시나리오 1(SCN1)

- 이민 유입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2%

- 시나리오 1의 이민자 수는 2015년에 730천명, 2030년에 658천 명, 2060년에 437천 명에 달하며, 이중 37.3%는 숙련노동자이고 62.7%는 비숙련 노동자임.

▶ 시나리오 2(SCN2)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5%로 설정

- 시나리오 2의 이민자 수는 2015년에 1,847천 명, 2030년에 1,644천 명, 2060년에 1,093천 명에 달함.

▶ 시나리오 3(SCN3)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0%

- 시나리오 3의 이민자 수는 2015년에 3,695천 명, 2030년에 3,289천 명, 2060년에 2,186천 명 증가한다고 가정함.

▶ 송금률에 대한 가정

- 이민자의 해외송금은 강동관 외(2010)에 따라 노동소득의 8.1%로 가정

(2) 분석결과

1)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 시나리오 1

- 매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2%씩 증가한다면, 총공급은 기준균형 대비 1.1%(16.8조 원)~2.1%(76.6조 원)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최고 0.07%p 증가할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15년에 3.53%로 추정되고 2060년에 0.73%로 추정되어 기준균형에 비해 각각 0.07%p, 0.0%p 높을 전망

▶ 시나리오 2

-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5% 증가한다면 총공급은 기준균형 대비 2.74%(41.9조 원)~5.13%(191.8조 원)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최고 0.17%p 증가할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15년에 기준균형에 비해 0.17%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2020년에 0.13%p, 2050년에 0.01%p 증가에 그칠 전망

▶ 시나리오 3

-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10% 증가한다면 총공급은 기준균형 대비 5.43%(83.0조 원)~10.27%(384조 원)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기준균형에 비해 0.33%p~0.01%p 증가할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15년에 기준균형에 비해 0.33%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2020년에 0.25%p, 2050년에 0.03%p 증가할 전망

시나리오별 총공급 변화

	기준균형 (조 원)	기준균형 대비 변화(%)			기준균형 대비 변화(조 원)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2015	1528.8	1.10	2.74	5.43	16.8	41.9	83.0
2020	1801.5	1.38	3.45	6.86	24.9	62.2	123.6
2030	2342.7	1.74	4.33	8.65	40.8	101.4	202.6
2040	2884.8	1.92	4.79	9.58	55.4	138.2	276.4
2050	3386.5	2.01	5.03	10.06	68.1	170.3	340.7
2060	3739.0	2.05	5.13	10.27	76.6	191.8	384.0

기준시나리오 대비 잠재성장률 변화

	기준균형 (%)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			기준 대비 잠재성장률 변화 (%p)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2015	3.46	3.53	3.63	3.79	0.07	0.17	0.33
2020	3.16	3.21	3.29	3.41	0.05	0.13	0.25
2030	2.35	2.38	2.42	2.48	0.03	0.07	0.13
2040	1.92	1.94	1.96	1.99	0.02	0.04	0.07
2050	1.34	1.34	1.35	1.37	0.00	0.01	0.03
2060	0.73	0.73	0.73	0.74	0.00	0.00	0.01

2) 거시경제변수 변화

▶ 거시경제변수 변화

- GDP는 기준균형 대비 시나리오 1에서 1.0%~2.0%, 시나리오 2에서 2.4%~5.0%, 시나리오 3에서 4.8%~10.0%에 달할 전망

- 소비는 기준균형 대비 시나리오 1에서 0.7%~2.0%, 시나리오 2에서 1.7%~5.0%, 시나리오 3에서 3.3%~10.1% 증가할 전망
- 투자증가는 기준균형 대비 시나리오 1에서 1.8%~2.1%, 시나리오 2에서 4.5%~5.2%, 시나리오 3에서 8.9%~1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시나리오별 거시지표 변화

	총금(10억 원)			GDP(%)			소비(%)			투자(%)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2015	1,022.4	2,556.0	5,111.9	1.0	2.4	4.8	0.7	1.7	3.3	1.8	4.5	8.9
2020	1,048.3	2,620.9	5,241.7	1.3	3.2	6.3	1.1	2.7	5.3	2.0	4.9	9.7
2025	1,062.4	2,655.9	5,311.8	1.5	3.7	7.4	1.4	3.4	6.7	2.0	5.1	10.2
2030	1,060.3	2,650.7	5,301.4	1.6	4.1	8.2	1.6	3.9	7.8	2.1	5.2	10.4
2040	1,040.1	2,600.2	5,200.4	1.9	4.6	9.2	1.8	4.5	9.1	2.1	5.4	10.7
2050	994.0	2,485.1	4,970.2	2.0	4.9	9.8	1.9	4.9	9.7	2.2	5.4	10.8
2060	912.0	2,280.0	4,560.0	2.0	5.0	10.0	2.0	5.0	10.1	2.1	5.2	10.5

3.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이민 규모 추정

(1) 분석 시나리오

▶ 기준균형 대비 잠재성장률 1%p 향상

- 잠재성장률의 목표를 기준균형에 비해 1%p 높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를 추정하고자 함.
 - 목표한 총공급량을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내생적으로 결정됨.

(2) 분석결과

1) 필요 이민자 수 추정

▶ 잠재성장률 1%p 상승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60년 17,224천 명에 달함.

-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15년에 1,660천 명, 2020년에 4,994천 명, 2030년에 9,267천 명, 2040년에 12,237천 명, 2050년에 14,791천 명, 2060년에 17,224천 명으로 필요한 이민자 수가 체증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38,613명에 달해 기준균형에 비해 4.5% 증가하고,

2020년에 13.7% 증가하고, 2050년에 58.4%, 2060년에는 76.8% 증가할 전망이다.

2) 거시경제변수 변화

▶ GDP 변화

- 송금이 없는 경우 GDP 변화는 총공급의 변화와 동일하지만, 송금이 있는 경우 자본 유출로 인해 GDP 증가분이 총공급의 증가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GDP는 기준균형 대비 2015년에 1.6% 증가하여 송금이 없는 경우에 비해 0.3%p 낮아질 전망
 - 송금액이 증가할수록 이 차이는 커져 2060년에는 송금으로 인한 GDP 손실은 1.9%p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소비 및 투자변화

- 소비는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기준균형 대비 2.4%~54.3% 증가하고, 송금이 없는 경우 2.8%~55.6% 증가하여 송금에 따른 차이가 0.4%p~1.3%p에 달함.
- 투자는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기준균형 대비 0.6%~43.7% 증가하고, 송금이 없는 경우 0.3%~64.9%로 추정되어 투자가 송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 송금으로 인해 투자의 증가폭이 0.3%p~21.2%p 낮아질 전망이다.

3) 가격변수 변화

▶ 소비자가격 변화

- 소비자가격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감소폭이 23.8%에 달할 전망

▶ 실질임금 변화

- 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60년에 최고 11.6%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최고 36%까지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비숙련이민자의 공급 증가효과와 낮은 생산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잠재성장률 1%p 제고에 따른 거시지표 변화

	송금액 (10억 원)	GDP (%)		소비 (%)		투자 (%)	
		송금	비송금	송금	비송금	송금	비송금
2015	2,251.3	1.6	1.9	2.4	2.8	0.6	0.3
2020	7,016.8	5.9	6.7	5.3	6.0	1.0	8.8
2025	11,018.9	10.8	11.9	9.6	10.4	2.5	16.2
2030	14,638.6	16.1	17.3	14.7	15.6	5.4	23.1
2035	18,126.3	21.7	23.1	20.2	21.1	9.4	30.0
2040	21,602.5	27.7	29.2	26.1	27.1	14.7	37.1
2045	25,052.9	34.1	35.6	32.5	33.5	20.6	44.4
2050	28,426.3	40.8	42.4	39.2	40.3	27.6	51.9
2055	31,729.8	47.8	49.6	46.4	47.6	35.0	59.1
2060	35,205.4	55.3	57.2	54.3	55.6	43.7	64.9

4. 이민 규모의 단계적 목표치 설정

(1) 분석 시나리오

▶ 이민 규모에 대한 단계적 목표치를 분석 시나리오로 설정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전까지는 이민 목표를 2015년에 5만 명,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15만 명을 목표로 설정
 - 2013년 현재 이민자 수가 14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목표는 합리적인 목표로 간주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다 야심적인 이민 유입을 고려하였음.
 - 2018년부터는 이민자를 포함한 생산가능인구 수가 2017년 수준인 37,168천 명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이민자를 추정하였음.
 - * 생산가능인구가 37,168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0년에 필요한 이민자는 374천 명에 달하며, 2030년에 4,274천 명, 2040년에 8,295천 명, 2050년에 11,821천 명, 2060년에 15,302천 명에 달함.
 - * 이는 기준균형하의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2020년에 1.7%, 2030년에 13%, 2050년에 46.6%, 2060년에 70%나 증가하는 수치임.

(2) 분석결과

1)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 총공급은 기준 대비 최고 47.1%, 잠재성장률은 최고 1.3%p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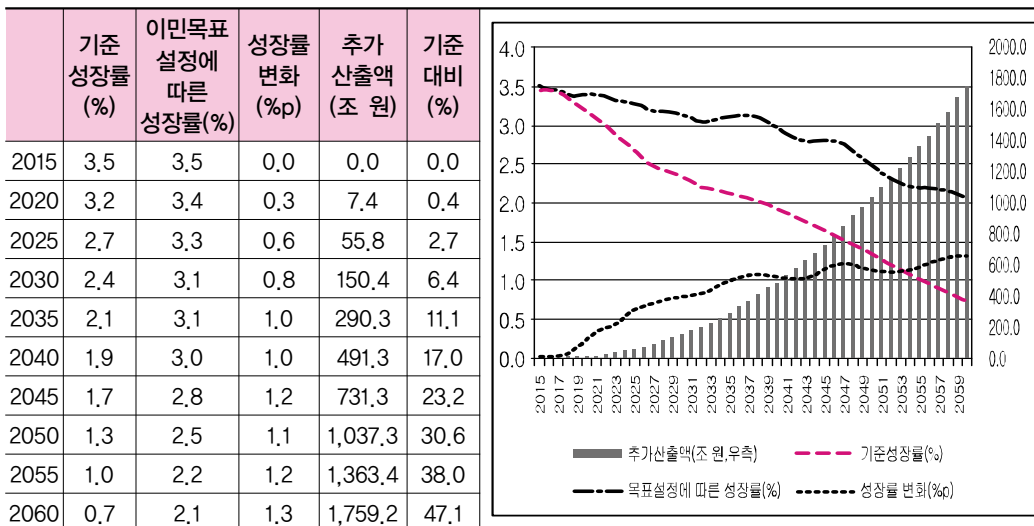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기준균형 대비 잠재성장률은 2020년에 0.3%p, 2040년에 1%p, 2060년에 1.3%p 증가할 전망

목표 생산가능인구 수 달성을 위한 필요 이민자 수

(단위: 천 명)

	인구	기준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목표	필요 이민자 수	이민비중 (%)
2015	50,617	36,953	37,003	50	0.1
2016	50,801	37,039	37,139	100	0.3
2017	50,977	37,018	37,168	150	0.4
2018	51,141	36,931	37,168	237	0.6
2019	51,294	36,793	37,168	374	1.0
2020	51,435	36,563	37,168	605	1.7
2030	52,160	32,893	37,168	4,274	13.0
2040	51,091	28,873	37,168	8,295	28.7
2050	48,121	25,347	37,168	11,821	46.6
2060	43,959	21,865	37,168	15,302	70.0

이민목표 설정에 따른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2) 거시경제변수 변화

▶ 국민계정변화

- GDP는 2020년에 기준균형 대비 0.3%, 2050년에 29%, 2060년에 45.4%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도 2060년에 43.7%까지 증가할 전망
- 투자는 2015년에 1.4% 감소하지만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60년에 57.8% 증가할 전망
- 소비자가격은 2030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0년 감소폭은 18.9%

이민 목표 설정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총금 (10억 원)	GDP (%)	소비 (%)	투자 (%)	소비자가격 (%)
2015	69.2	0.0	0.6	-1.4	7.0
2020	866.7	0.3	1.0	-1.3	6.6
2030	6,888.9	5.8	5.4	8.4	2.7
2040	14,940.6	16.0	14.7	23.3	-4.2
2050	23,178.5	29.3	27.6	40.1	-11.7
2060	31,913.3	45.4	43.7	57.8	-18.9

3) 노인부양비 변화

▶ 이민증가에 따른 노년부양비는 이민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상이하지만 2050년 이전까지는 노인부양비가 감소할 전망

- 2060년에 생산가능인 100명당 노인 80.6명을 부양할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2020년에 노인 21.8명, 2030년에 34.1명, 2040년에 44.4명을 부양하여 이민 확대는 노인부양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 이민자가 노년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 이민 확대는 장기적으로 노인부양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제5장 결어 및 시사점: 이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단순인력제도의 개선

▶ 국내 단순인력의 국내 정주화 가능성 검토

-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상 단순인력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이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단순기능인력의 숙련 기능인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탐색 필요
 - 2013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은 40대가 4.7%, 30대가 37.7%, 20대가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13.1%, 전문대졸 18.6%, 고졸 47.7%, 중졸 19.2%, 초졸 이하가 1.4%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중에서 능력에 따라 숙련화와 정주화가 가능한 인력도 존재

▶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기반을 둔 부족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일률적으로 비전문 단순직종으로만 분류하고 사증기간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숙련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국내의 외국인력 도입 체계는 숙련과 비숙련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숙련수준이 존재하고 있어 숙련수준에 맞는 다양한 인력 도입체계 구축이 요구됨.

▶ 재외동포에 대한 쿼터 확대 지속

- 2010년부터 303,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음.
-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포를 우대할 필요

▶ 단기적인 인력부족상황만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실업률, 유휴인력),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고려 미흡

- 장기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외국인력 적정규모 추정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행정통계 미비
-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도입

2. 단순기능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서의 정책 중심 전환

▶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한 외국인력 활용

-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급인력 적극유치, 단순기능인력 유입억제라는 공통된 기조 하에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견지
-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숙련자일수록 노동대체 탄력성이 낮고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아울러 이민자가 숙련자일수록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높으며, 이주자의 본국의 GDP, 즉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가재정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저숙련자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아닌 숙련자와 가능한 고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미숙련자들에 의한 생산이 최종생산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

- 단순기능 외국인력들이 일하는 업종은 주로 3D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생산물이 최종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산물이라는 감안한다면 단순기능 외국인력들의 노동가치로만 경제효과를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단기적으로 임금감소,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소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더라도 그 대체수준은 낮음.

3. 국내 전문인력 제도의 개선

▶ 전문인력은 기술, 인재 중심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강화와 생산성을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

-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유입)은 인적자원이 경쟁국가로 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저하(상승)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유입)은 한 나라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점함.

▶ 체류 조건을 완화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 필요

- 전문 인력들 중에서도 핵심인재에 대한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

▶ 비자분류체계의 개선

- 우리나라 역시 체류자격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상술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기술인력으로 분류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를 재설정할 필요
 - 국가마다 실행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따라 전문인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 각양각색임.
 -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의 확립아래 어떤 업종에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특정 직종에 따라 인력 수급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이며,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

▶ 정책대상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지원프로그램 제고

- 외국에서 선별하여 유치하는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동포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대기업의 인력수요 특성을 구분해서 파악

4. 국내연구의 활성화 및 전담조직 신설

▶ 노동시장의 수요 파악이 전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국 근로자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줄이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수요파악은 전제조건임.

▶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 전망과 모형개발

-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이 필수
 -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수요 전망 필요

▶ 외국인력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외국인력의 규모가 전체인구의 3.1% 이상이며, 그 대상도 다양화 되고 있어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전담기구가 필요

-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인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control tower 필요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이민 확대의 필요성

▶ 노동공급확대가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이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빠른 고령화와 2016년 이후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¹⁾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와 자본에 의존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는 노동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예정에 있어 노동공급 확대 없이는 잠재성장률 제고는 불가능할 전망

▪ 고령화의 영향으로 저축률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본에 의존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생산대비 자본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약화됨.

* 이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소하여 자본의 기여도는 더욱 하락할 전망

▪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생산성 향상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정한 연평균 1.2%를 상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유입이 요구되고 있음.

▪ 이민이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저축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향상되어 자본축적도 함께 증가하게 됨.

▪ 또한 숙련노동자의 유입으로 총요소생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는 기대이상으로 클 전망이다.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 저출산과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도 이민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60년의 사회적 부양비는 101명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 따라서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요구되는데 향후 출산율이 증가할 여지가 낮아 이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더불어 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의 둔화 유발 예상²⁾

- 최근의 농촌 지역의 폐교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의 감소는 공적 영역에서도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초래

▪ 이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되어왔던 대규모 사회 인프라투자 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경제 활동의 큰 축을 차지해 왔던 공적 영역에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서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고용이 둔화되는 결과를 유발

- 경제활동 및 고용의 둔화는 국가의 전체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반대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부담의 증가는 다시 개인이나 가계의 저축이나 투자의 감소로 연결되어 고용 시장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즉 이렇게 인구의 감소로 인한 수요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가 계속되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growth)과 발전

- 한 나라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본, 금융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자연자원 및 환경 등 경제의 주요 자산이 왜곡됨이 없이 상당히 균형적 성장률로 증가되어야 함.

- 물질적 자본의 축적이 인적자본의 증대 및 시장개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2) 강동관 외(2010) 참조

- 그러므로 인적자본 증대를 위한 적절한 이민정책, 이민자의 현명한 활용과 위험의 적절한 관리, 효율적인 통치 사회자본의 확충 등은 지속적 성장의 조건으로서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

(2) 이민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필요성

- ▶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혹은 국내 이민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필요한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신 유목민 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이민 현상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이 요구됨.

-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세계 총 이주자(저량)는 약 1.95억 명이었고, 2010년 기준으로는 약 2.13억 명임.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인구의 3.1%로 이미 이민은 어느 나라의 특수화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화된 현상임을 보여줌.
- 따라서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이민 환경-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처한 이민의 현 상황을 파악, 분석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가 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임.

- 둘째,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인적 자본의 확대와 노동의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책대안 중의 하나가 이민정책임을 고려할 때, 이민확대정책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
- 이민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 및 소비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이민 확대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장기적 비전 아래 전략적 정책선택이 필요

2. 연구 목적

- ▶ 이미 보편화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이민의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로 인해 생산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국내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의 이민정책방향을 모색하려는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민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민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민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목표치로 하여 수용가능한 단계적 이민 규모 제시

3. 연구 범위

▶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해외 주요국가에서 이루어진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이민 현황

- 국외 이주 증가 배경, 이주동향 및 정책동향
- 국내 이주 증가 배경 및 현황, 취업자격 이민제도의 현주소 및 평가

▶ 이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

- 거시 경제적 효과
-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이민 규모 추정
- 이민 규모의 단계적 목표치 설정

4.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으로 나눔

- 선행연구
 -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의 검토
 - 우리나라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존연구의 검토로부터 하나의 시사점, 즉 이민의 효율성이나 한계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실증분석

- 이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가능일반균형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 추정

제2장 이민의 이론과 실제

1. 이민의 이론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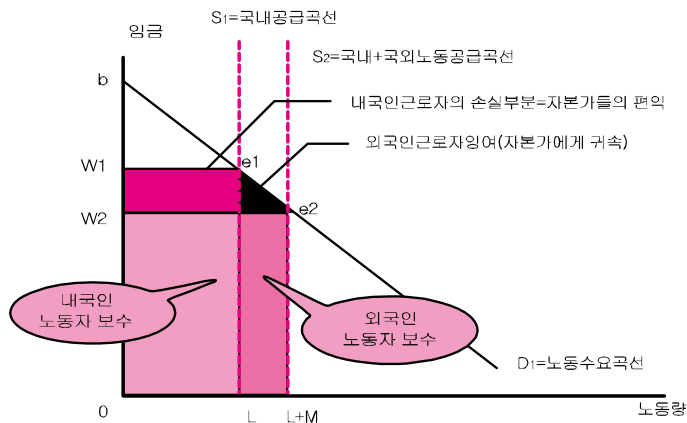
▶ 전통적인 노동시장 이론: 비탄력적 공급곡선

- 가정

- ① 노동과 자본은 보완관계이며 본국의 자본은 고정
- ② 노동시장은 경쟁적
- ③ CRS(constant returns of scale): 노동 투입에 대한 보수 불변
- ④ 이민 근로자 노동의 질 = 본국 근로자 노동의 질(완전한 대체관계)
- ⑤ 이민자에 의한 노동공급압력(supply push)이 존재: 이민자에 의한 노동 공급량=M

- 균형과정 및 잉여의 측정

[그림 2-1] 노동의 수요 공급과 균형 및 잉여



- 초기 균형(노동이전의 균형)

- 주어진 국내 노동량(L)과 노동수요에 의해 초기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은 e1, 균형임금은 w_1 , 노동량은 L

- 균형점 e_1 하에서는 수요자에게는 삼각형 bw_1e_1 만큼의 수요자 잉여(혹은 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를, 공급자에게는 사각형 w_20Le_0 만큼의 공급자잉여(혹은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발생

- 개방경제하의 균형

- 이민자가 M만큼 유입되면 새로운 노동공급곡선은 국내노동공급(L)과 국제 노동공급(M)을 합한 노동공급곡선(S_2)과 노동수요곡선(D_1)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
- 균형점은 e_2 , 노동임금은 w_2 , 이 노동 가격 하에서는 L+M 만큼의 노동의 공급과 수요 형성
- 수요자는 이전의 수요자 잉여(삼각형 bw_1e_1) 보다 훨씬 많은 수요자 잉여인 삼각형 bw_2e_2 를 갖게 됨.
- 국내노동자들은 L만큼의 노동을 제공하고 w_1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방경제하에서는 임금이 w_2 로 하락하고, 노동 공급자들의 잉여는 사각형 w_20Le_0 로 줄어들게 됨(손실된 부분은 사각형 $w_1w_2e_0e_1$).
- 손실된 부분은 자국근로자들의 손실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임.

- 개방경제하의 순이익

- 삼각형 $e_0e_1e_2$ 만큼의 순 경제적 이익(net gain)이 발생
- 경제적 순이익(잉여)은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기울기)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짐.
- 삼각형 $e_0e_1e_2$ 의 측정

$$\text{잉여} = \frac{1}{2} \times w_1w_2 \times (L+M-L) = \frac{1}{2} \Delta W \Delta M = \frac{1}{2} \frac{\frac{M}{L}}{\frac{\Delta W}{W}} \Delta W^2 \frac{L}{W} = \frac{1}{2} \eta \frac{\Delta W}{W} \Delta WL$$

* 위 식에서 η 는 임금에 대한 노동의 수요 탄력성으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임금변화가 크면 클수록, 노동대비 임금비용(노동수용곡선의 역 기울기)이 크면 클수록, 이 주자들에 의해 발생된 잉여가 자본가 혹은 노동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³⁾

$$\text{잉여} = -\frac{1}{2} \eta l s^2 GDP,$$

η = 노동의 임금탄력성,
 l =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s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시장 점유율

* Hamermesh(1993)는 위의 추정방정식을 이용하여 노동탄력성 값을 추정하였는데 그

3) Bodvarsson and Van den berg(2009) 참조

값은 -0.3으로 매우 비탄력적으로 나타남: 10%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3%의 임금하락을 유발한다는 의미임.

2. 실증분석 사례4)

(1) 거시 경제효과

▶ Borjas(1995)

- 10%의 이민자 증가에 의한 1995년의 연간 순이익은 US GDP의 0.1%인 70억 달러 추정
 - Borjas와 같은 가정하에 Johnson(1997)의 연구에서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1,000만 명 증가할 때(약 8%) 250억 달러(GDP의 약 0.036%)
 - Borjas 외(1997)의 연구에서는 910억 달러(GDP의 0.13%)의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Freeman(2006)

- 10%의 이민 증가는 GDP의 약 0.2%에 해당하는 경제적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서 0.2%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자 및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귀속된 GDP(4.2%)와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 대상이었던 내국인 근로자의 GDP 손실(4.0%)과의 차이를 의미함.

▶ Bodvarsson and Berg(2009)

- Borjas(1999)의 위의 추정방정식⁵⁾을 이용하여 국내 노동자 손실부분과 순 경제적 효과를 측정
- 국내 노동자의 손실은 GDP의 1.9%인 2.64조 달러, 자본가들의 이익은 GDP의 2%인 2.78조 달러로 순경제적 효과는 약 146억 달러로 나타남.
- 순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내 노동자의 손실 부분은 막대(순경제적 효과의 18배)하다는 결과임.

▶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용 경제효과 분석 사례

4) 이민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강동관 외, 2010) 재인용

5) $\frac{\text{국내노동자손실(자본가이익)} + \text{순경제적 효과}}{\text{GDP}} = \eta \cdot l \cdot s(1 - \frac{s}{2})$

- Walmsley, Winters and Ahmed(2005)

- 3%의 추가적인 노동력이 도입될 경우, 비숙련에 의한 실질 GDP 증가는 0.99%인 반면 숙련에 의한 실질 GDP 증가는 0.71%⁶⁾
- 숙련과 비숙련이라는 노동의 이질성에 따라 경제적 분배효과가 다름.
 - * 비숙련자의 증가는 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질의 노동인 비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즉 보완적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순이익이 발생하지만, 대체재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2-1] 비숙련 및 숙련 근로자의 도입에 의한 거시경제효과

	실질GDP	실질수출	실질수입	투자	실질임금(비숙련)	실질임금(숙련)
비숙련	0.99	1.61	0.27	0.63	-1.51	0.63
숙련	0.71	1.08	0.13	0.35	0.46	-1.68

출처: Walmsley, Winters and Ahmed(2005)

- Walmsley, Winters and Ahmed(2007)

- 외국인력 수입국(미국, 캐나다, 유럽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 노동력 3%에 상당하는 규모의 이민 노동력이 증가할 때의 전 세계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함.
- 미국의 경우 비숙련 및 숙련 이민 노동력이 각각 3%의 증가할 때, 실질 GDP가 각각 1.46% 및 0.85% 증가
- 일본의 실질 GDP는, 비숙련 및 숙련 이민 노동력이 3% 증가할 때, 각각 1.44% 및 0.89% 증가
- 노동력 수출국인 중국의 실질 GDP는, 선진국에서 비숙련 및 숙련 이민 노동력이 3% 증가할 때, 각각 0.17% 및 0.04% 하락
- 노동력 수출국인 멕시코의 실질 GDP는 각각의 경우 1.05% 및 0.76% 하락

- Walmsley, Ahmed and Parsons(2009)

- 태평양지역 모드4 분석결과: 전 세계 양방향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국제 이주 노동력 자료: 226개국, 송금자료: 87개국)를 버전6의 GTAP(Global Trade Analysis)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국제 인력이동 및 GATS 모드4⁷⁾를 분석

6) 추가적인 3%의 증가는 예를 들어 6%에서 9%로 인구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가율은 $[(9-6)/6]100\%=50\%$ 가 된다. 따라서 10%의 증가에 의한 GDP의 증가는 비숙련의 경우 0.20%, 숙련의 경우 0.14%가 된다.

7) Mode 4(자연인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 호주, 뉴질랜드에서 GATS 모드4 외국인 인력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 1.5%에 상당하는 규모로 증가할 경우 호주, 뉴질랜드 및 태평양 도서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호주의 실질 GDP는 각각의 경우 0.4% 및 0.3% 증가
- 뉴질랜드의 경우는 각각 0.39% 및 0.19% 증가
- 노동력 수출국인 태평양 도서국가의 실질 GDP는 동 실험에서 각각의 경우 1.12% 및 0.79% 하락함.

- Economic Impacts of Immigration(2009, 뉴질랜드)⁸⁾

- 이주가 현재의 2배로 되었을 경우
 - * 평균 20,000명의 이민자 유입이 있지만 매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은 40,000명의 영주권자와 장기 거주자가 본국으로 유입된다면, 2021년도에는 인구가 6.1% 증가(4.5백만에서 4.8백만으로 증가)
 - * 이것은 7.4%의 노동자가 증가로 귀착 예상, GDP는 7.6% 증가, 1인당 GDP는 1.5% 혹은 800달러가 높을 것으로 예상, 수출은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순 이민자가 0일 경우의 경제적 효과
 - * 2021년에는 인구는 4.5백만에서 4.1백만으로 감소(9.6% 감소), 노동인구도 10.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GDP는 11.3% 감소, 따라서 1인당 GDP 역시 1.8% 하락하며 이것은 약 1,000달러에 해당됨.
 - * 무역 역시 2021년에는 12.9%가 하락

- OECD가 2006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력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 단기적으로는 임금을 감소(0.12%)시키고 실업률을 증가(0.23~0.44%)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⁹⁾

▶ Fiscal Impact Model을 이용한 비용 편익 분석(DIAC: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08, 호주)

- 재정적 효과를 검토한 결과 1,000명의 영주권자가 발생할 경우 1년 후에는 3.4백만 달러, 5년 후에는 5.8백만 달러, 10년 후에는 7.7백만 달러, 20년 후에는 8.4백만 달러의 재정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함.

8) 출처: Nana, Ganesh, Kel Sanderson, and Rob Hodgson(2006)

9) 이민자 1% 증가 시의 효과임(출처: Migration in OECD countries: Labour market impact and inegration issue, 2006)

- 가족 그룹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으로 잉여(surplus)가 발생함.
- 가족 그룹 중 부모들의 경우가 재정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고용자후원그룹(employer sponsored)이 재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참조).

[표 2-2] 영주권자의 재정 순잉여(손실)효과

(단위: 천 명당, 백만 달러)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가족 1	-4.8	-3.5	-4	-3.9	-4.2	-4.7	-9.2	-7.7
가족 2	2.1	4.3	3.6	4.3	3.5	6.6	6.6	6.9
가족 3	2.7	-1.2	0.4	-1.2	-1.4	-2.1	-8.4	-8.7
GSP Sponsored	2.7	5.1	5.1	5.6	5.8	6.7	7	7.35
GSM Independent	4.7	6.3	7	8	8.3	10.3	10.8	11.7
GSM Student	4.6	7.3	6.9	7.3	7.6	9.1	8.9	9.1
GSM Regional Sponsored	3.8	4.4	4.6	6	5.6	6.2	6.4	7
Employer Sponsored	13.8	14.3	14.2	14.4	14.4	15	15.1	15.2
Businesss Skills	5	5.9	6	5.2	5.2	6	5.4	4.5
Humanitarian or refugee	-20.1	-7.2	-6.6	-5.8	-5.6	-1.1	1.2	4.3
Total Permanents	3.4	5.4	5.3	5.9	5.8	7.7	7.8	8.4

주: 가족 1은 부모, 가족 2는 기여제 부모초청으로 정해진 기여금을 납부하면 일반 부모 초청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가족 3은 부양자녀, 배우자, 약혼자, 입양아동, 부양노령친척(aged dependent relatives) 보호자(carer), 나머지 친척(remaining relatives) 상호부양자(interdependent)를 포함함.

출처: Migrant Fiscal Impact Model:2008

(2) 수용국 노동시장의 대체 효과

▶ Loghi, Nijkamp and Poot(2006)

- 미국, 독일, 호주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및 EU 등 9개 연구결과로부터 165개의 대체 탄력성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탄력성이 -0.390에서 최대 0.620 정도이며 평균값은 -0.024로 나타남.
- 즉 1%의 이민 증가는 약 0.24%의 임금감소를 가져옴. 이러한 경향은 나라의 고용시장과 GDP 크기가 클수록 그 효과가 낮고, 나라의 고용시장과 GDP 크기가 작을수록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대체 탄력성이 -0.005로 1%의 이민 증가는 약 0.005% 임금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탄력성의 평균값은 -0.032로 나타남.

- 내국인 전체 전문기술인력에 미치는 영향은 1%의 이민 증가는 약 0.023% 임금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미숙련자의 경우 탄력성이 -0.041로 조금 높게 나타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함.

▶ 기타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내국시장의 대체성 분석 사례

- Bratsberg et al.(2010): 노르웨이의 경우 이민 온 국가를 대상으로 대체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노르딕 국가의 경우 -0.035, 고소득 국가의 경우 -0.009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0.005로 나타남. 이것은 출신국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임금효과가 낮음을 의미
- Borjas(2003): 미국전체를 대상으로 대체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0.05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발표한 연구인 흑인과 백인 간의 대체 탄력성 값보다 높은 것임.
- Card(2001): 노동대체탄력성이 -0.014로 나타나 Borjas(2003)의 -0.051보다 약 1/3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의 연구에서, 고등학교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비슷한 -0.042로 나타남.

[표 2-3] 대체탄력성에 대한 연구결과

연구자(연도)	대상	이민자영향 상수값	대체탄력성값	나라
Bratsberg et al.(2010)	전체	-0.484	-0.028	Norway
	노르딕 국가	-2.747	-0.035	
	그외 고소득 국가	-0.586	-0.009	
	개발도상국	-0.139	-0.005	
Borjas(2003)	전체	-0.572	-0.051	USA
Card(2001)	전체	0.099	-0.014	USA
Card(2009)	고등 및 전문대학 이상	-0.26	-0.042	USA
Aydemir and Borjas(2007)	전체	-0.489	-0.044	USA
	전체	-0.507	-0.072	Canada
Borjas et al(2010)	흑인	-0.346	-0.031	USA
	백인	-0.522	-0.047	USA
Manacorda et al(2010)	나이	0.193	-0.005	UK
	남자	0.142		
Ottaviano & Peri(2008)	경륜	0.07 to 0.16	-0.002 to -0.011	USA
	남자	0.05		
D'muri et al.(2010)	남자	0.31	-0.029	USA

참조 부분: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노동만을 고려한 탄력성임.

자료: 법무부, 이민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강동관 외, 2010) 재인용

- Aydemir and Borjas(2007): 노동대체 탄력성이 -0.041로 이민자의 유입이 노동시장

에 주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 Manacorda et al.(2010): 영국의 경우에는 이들의 대체탄력성 값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이 임금에 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표 2-3] 참조).

3. 소결

▶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임.
- 긍정적인 측면은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고용기회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임.

▶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더라도 그 대체 수준은 낮음[Grossman (1982), Borjas(1986); Butcher and Card(1991), Lalonde and Topel(1991a, 1991b)].

-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내국인 근로자의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성 여부 및 기타 요인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대체 수준은 낮음.
-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숙련자일수록 노동대체 탄력성은 낮고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민자가 숙련자일수록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높으며, 이주자의 본국의 GDP, 즉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가재정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는 유입국 입장에서 볼 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등 경제의 각 부문의 상호작용 효과의 최종결과로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는 유입국의 국민들이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긍정적 효과) 및 조세 효과(소득세 및 간접세 증대 효과)가 있음.
- 반면, 불법체류, 범죄 단속을 위한 행정력의 추가적 비용(부정적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의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 비용(부정적 효과), 외국인 근로자

- 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용에 의한 추가적 혼잡비용(부정적 효과)이 존재
-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국 근로자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줄이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통합적인 차원의 노력 필요



제3장 이민의 국내외 현황

1. 해외의 이민

(1) 이주 증가 배경

▶ 이주의 보편화

- 이미 이민은 어느 나라의 특수화된 현상이 아니라, 이미 보편화된 현상
-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세계 총 이주자(저량)는 약 1.95억 명이었고, 2010년 기준으로는 약 2.1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1%에 해당

[표 3-1] 세계 총이민자 수와 총인구

(단위: 천 명)

Indicator	1990	1995	2000	2005	2010
총이민자 수(A)	155,518	165,968	178,498	195,245	213,943
총인구(B)	5,290,452	5,713,073	6,115,367	6,512,276	6,908,688
A/B(%)	2.9	2.9	2.9	3.0	3.1

자료: World Migration Report 2013

- 2005년 말 현재 이민자는 1990년(약 1억 5천 5백만 명)보다 21% 정도 증가했으며, 인구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국가는 211개 국가 중 35개 국가에 해당
- 보편화 과정을 견게 된 배경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바, 이러한 자유경쟁은 국제적으로는 세계화(globalization)¹⁰⁾를 가속화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동과 더불어 노동의 이동도 가속화
 - * 2차 대전 이후, 1944년 7월 44개국이 미국의 브레턴우즈(Breton Woods)에 모여 국제 통화질서 구축을 위한 협정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브레턴우즈협약¹¹⁾으로 교역확대

10) 신자유주의에 의해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의 효율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간 시장개방이 진행되었고,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개별국가의 국경개념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여 자본, 노동, 기술, 지식 등이 하나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세계화임.

와 자유로운 거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음.

* 글로벌 기업들의 탄생과 현지화: 이윤추구를 위해 현지화에 따른 비교우위의 재화 생산과 지역 인재 활용이 활발함.

▶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

- 세계화와 더불어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각국 간에 존재하던 국경의 개념을 허물어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나아가 신유목민(digital nomad)을 탄생시키면서 세계 이민을 보편화하는데 공헌

▶ 선진국의 인구환경과 노동시장의 엇박자(mis match)

-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구 환경이 변화하는 동시에 고학력화로 인하여 숙련 부분에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반면, 비숙련 부분에는 노동 부족 현상(노동시장의 엇박자)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의 수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국가 간 노동이주로 나타남(전 세계 이주자의 44%가 저숙련, 33%가 중간숙련자임. Durmont et al., 2010).

- 세계 인구는 2010년 69억에서 2040년 88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인구비중은 18%에서 15%로 하락하고, 65세 비중은 16%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재 중심의 고용과 산업개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고임금 시장에서는 실업이 감소하는 반면, 저임금 시장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은 탈공업화 진행하는 한편 자본집약적인 상업, 금융, 보험, 수송 등의 3차 산업과 지식, 정보, 의료, 교육 등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지식정보산업, 패션, 오락, 레저 등의 문화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경제적 부의 획득

- 도시국가와 GDP가 주어지지 않은 30개 국가를 제외한 181개국에 대해서 목적국에서의 이민자의 인구비율과 목적국의 GDP를 보여주고 있음.

- 이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제임.

▪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로 이민이 증가하는 성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경제 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의 증거

11) 1971 Nixon 대통령의 금태환 정치 선언으로 사실상 이 제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한편 지역통화를 중심으로 통화균형을 맞추고 투기적인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하자는 통제된 하나의 금융시스템으로 재편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신 브렌튼우드 체제임.

[표 3-2] 이민자 비율과 목적국의 평균 인당 GDP

이민자의 비율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5% 미만 1% 이상	1% 미만	전체
목적국의 평균 인당 GDP(달러)	36,865	17,266	15,335	5,924	4,383	8,771.21
나라 수	18	30	26	76	38	181

자료: World Migration Report 2013

(2) 외국의 이민정책 동향

▶ 고숙련자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저출산 경향과 인력불균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에 적극적임.
- 하지만 대부분 전문기술인력 유치에는 적극적이거나 단순기능인력은 단기적 활용에 중점
- 저숙련노동자에 대해서는 제한적 이민 허용
 - 캐나다 정부는 사업체당 저임금 외국인력 비율을 2014년 30%, 2015년 20%, 2016년 10%까지 점차 줄이겠다고 발표
 -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WHMP)을 통해 단순인력 수요 해소
- 고소득국가의 경우 고숙련자 이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저소득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이민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Gross & Schmitt, 2006)
 - 1983년부터 2000년까지는 저숙련자와 고숙련자 그리고 중간수준의 기술자 분포가 각각 35%, 31%, 34%로 비슷한 수준
 - 출신국가별로는 고소득 국가 및 OECD 국가 출신들이 전체의 66.2%인 173,761명으로 가장 많고, 중동과 아프리카(15.1%) 중부유럽 및 중앙아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고소득 국가 중 숙련자 비중은 미국의 경우 이민자 중 89%, 일본은 84%, 캐나다는 82%임.
 - 헝가리(63%), 남아공화국(67%), 멕시코(61%) 아르헨티나(57%) 등도 총 이민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숙련자임.
 - 반면 저소득 국가인 기니, 말리,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은 10% 미만임.

[표 3-3] 기술수준별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1983~2000)

(단위: 명, %)

	전체 이민노동자	지역별 비중	고/저숙련자 비율		고숙련자 비중이 높은 국가(비율)	고숙련자 비중이 낮은 국가(비율)
			저숙련자	고숙련자		
전체	261,761	100.0	91,316 (35%)	81,208 (31%)	-	-
고소득 국가/ OECD	173,394	66.2	54,691 (32%)	60,296 (35%)	미국(89%), 일본(84%), 캐나다(82%)	포르투갈(2%), 이태리(24%), 덴마크(27%)
중동과 북아프리카	39,564	15.1	13,277 (34%)	11,614 (29%)	시리아(46%), 이집트(46%), 이란(42%)	레바논(22%), 모로코(31%), 튀니지(33%)
중부유럽/ 중앙아시아	18,241	7.0	9,301 (51%)	2,727 (15%)	헝가리(63%), 체코(54%), 불가리아(45%)	터키(8%), 폴란드(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579	6.3	7,977 (48%)	3,021 (18%)	남아공(67%), 마다가스(42%), 카메룬(41%)	기니(2%), 말리(7%), 토고(8%)
동아시아	8,895	3.4	4,237 (48%)	1,768 (20%)	태국(34%), 중국+타이완(34%)	라오스(1%), 캄보디아(1%)
라틴 아메리카	3,326	1.3	1,225 (37%)	1,190 (36%)	멕시코(61%), 아르헨티나(57%)	브라질(27%)
남아시아	1,762	0.7	608 (35%)	592 (34%)	인도(46%)	파키스탄(9%)

자료: Gross & Schmitt, 2006, 이규용 외(2008) 재인용

▶ 고령화의 대응수단으로서의 외국인 정책

- OECD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
- 연금, 의료개혁, 사회보장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이 정책의 핵심
 - 2차 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 전후로 은퇴연령에 진입함으로써 고령화가 가속화

▶ 시장수요를 반영한 인력도입

-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
 - 공급 위주에서 수요 위주의 이민제도
 - EU의 경우 EU 회원국 국민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력수요에 대해서만 제3국 출신자 도입을 허용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민정책을 근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고용허가제(사업주 중심) 또는 노동허가제(개별 근로자 중심)를 근간으로 활용
 - 목표치는 실태조사, 생산가능인구에 기반한 외국인력 도입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영주이민정책에서 활용(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상한선은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나 동향을 근거로 한시적 비정주형 외국인력 도입에 활용(미국, 영국, 노르웨이, 한국 등)
 - 인력부족 리스트는 주로 전문직에 활용(캐나다, 뉴질랜드 등)하고 있으며, 매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자국노동시장 보호

- 외국인력의 채용이 국내 내국인력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시행(예: 동일 노동에 대한 내외국인의 동일 임금)
- 외국인력 정책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관심 증가

(3) 국외 이주 동향

▶ 이주통로: 크게 이주를 4개의 이주통로로 볼 수 있으며, 남-남과 북-북이 주요 통로임.

- 남반구에서 남반구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이주가 최대(3.7백만 명),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는(3.5백만 명),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과 이란, 인도에서 파키스탄, 인도에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순임.
- 아프리카의 경우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에서 코트디부아르(Coted'Ivoire)가 상위 20대 이주통로임.

- 남반구에서 북반구

- 멕시코에서 미국(12.23백만 명, 전 세계 이주자의 6%)이 최대, 그 다음으로 터키에서 독일, 중국, 필리핀, 인도 등에서 미국으로의 이주 순임.

- 북반구에서 북반구

- 독일에서 미국(1.3백 만 명)이 최대, 그 다음이 영국에서 호주, 캐나다에서 미국, 한국에서 미국, 영국에서 미국 순임.

- EU 멤버 중 독일, 이태리, 폴란드, 영국이 북-북(특히 미국) 이주의 주요 송출국임.
- 미국의 경우 그 외에도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한국이 주요 송출국임.

- 북반구에서 남반구

- 미국에서 멕시코(0.6백만 명)가 최대, 그 다음이 미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0.3백만 명), 독일에서 터키,(0.3백만 명) 포르투갈에서 브라질(0.2백만 명) 순임.

[표 3-4] 국제 이주 현황

이동방향	송출국	수용국	이민자 수	전체비율
남-북	Mexico	United States	12,189,158	12.8
	Turkey	Germany	2,819,326	3
	China	United States	1,956,523	2.1
	Philippines	United States	1,850,067	1.9
	India	United States	1,556,641	0.7
북-북	Germany	United States	1,283,108	4
	United Kingdom	Australia	1,097,893	3.5
	Canada	United States	1,037,187	3
	Korea, Republic of	United States	1,030,561	2.8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901,916	2.5
남-남	Ukraine	Russian Federation	3,662,722	4.9
	Russian Federation	Ukraine	3,524,669	4.7
	Bangladesh	India	3,190,769	4.2
	Kazakhstan	Russian Federation	2,648,316	3.5
	Afghanistan	Pakistan	2,413,395	3.2
북-남	United States	Mexico	563,315	7.8
	Germany	Turkey	306,459	4.3
	United States	South Africa	252,311	3.5
	Portugal	Brazil	222,148	3.1
	Italy	Argentina	198,319	2.8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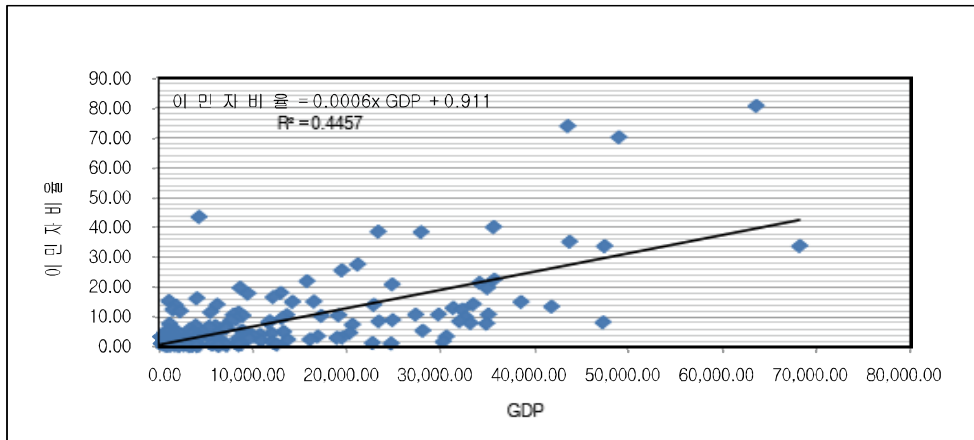
▶ 북반구 인구의 10%~12%를 이주자가 차지, 반면 남반구의 경우 이주자가 남반구 인구의 2%를 차지

- 남반구-남반구 이주를 제외하면 주 이주자는 남성임.
- 송금의 43% 이상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보내짐.

- 특히 북반구에서 북반구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경우 삶의 질(복지)수준이 높아진 반면, 남반구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삶의 수준은 이전과 같거나 나빠짐.

-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세계 각국의 GDP와 이민자 수의 증가율과의 단순 관계를 측정한 것으로 1인당 GDP가 1,000.00\$씩 높아질 때마다 이민자는 목적국 인구의 0.6%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3-1] 각국의 GDP와 이민자 비율



자료: 법무부, 이민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개선 방향(강동관 외, 2010) 재인용

2. 국내의 이민

(1) 이주 증가 배경

1) 인구구조 추세와 영향: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변화

- ▶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총인구는 2013년 현재 5,022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4,396만 명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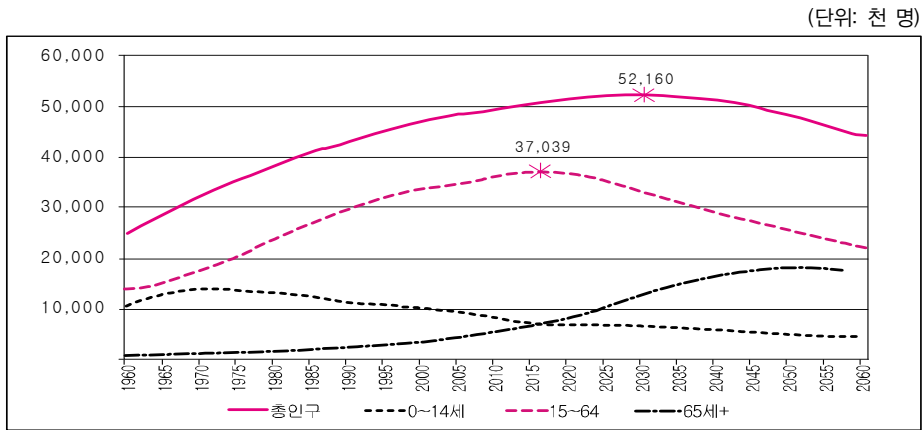
- 인구성장률은 2013년에 0.43%에서 점차 둔화되어, 2031년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진입한 후 2060년에 -1.0%까지 감소율이 확대될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2,187만 명까지 줄어듦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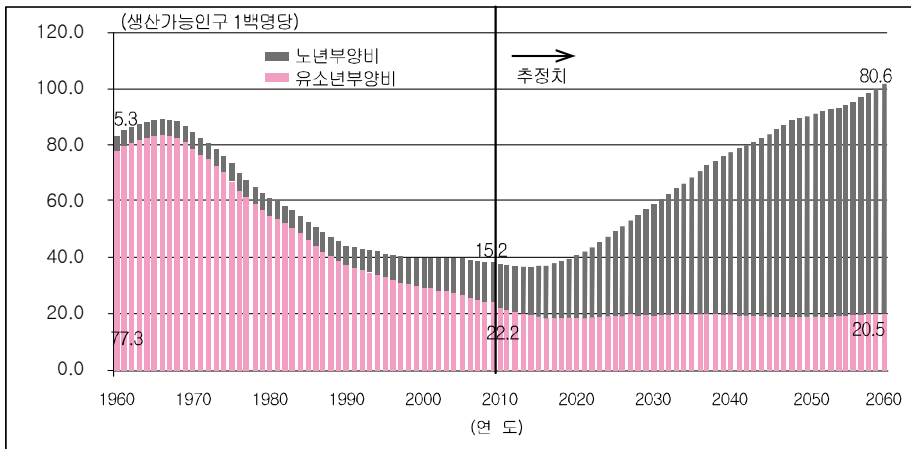
-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의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2만 명 감소하고 2020년에 23만 명이 감소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감소율이 크게 증가하여 2060년까지 연평균 약 36.7만 명씩 감소할 전망

[그림 3-2] 연령별 인구(1960~2060)



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그림 3-3]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



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통계청, 2011

▶ 2060년,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

- 고령인구 규모는 2017년 유소년인구를 초과,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 4배까지 늘어날 전망

-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노인 16.1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 2060년 101.0명(노인 80.6명)으로 부양인구가 더 많아짐.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4년 1.19명)

-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2년의 경우 2.39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1987년 1.53까지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1992년까지 1.78로 약간의 회복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2005년 한때 1.08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음.

2) 인력부족과 노동수급의 엇박자

▶ 산업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후발 개도국의 부상과 추격, 제조업의 공동화 및 탈공업화, 산업 간의 격차 심화, 신성장 산업의 출현으로 국내 산업 구조변화가 불가피한 시점
 -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신성장 산업¹²⁾을 중심(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
- 경제의 이중구조(dual structure of economy)화 현상
 - 대기업은 시장 확대를 통하여 성장해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위축과 몰락이 촉진되면서,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노동집약적 3D업종이 일반화
 -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구조의 이중성, 즉 만성화·대량화한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는 반면, 기술·숙련 노동력은 부족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mismatch)를 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¹³⁾

- 자사의 인력수급 사정에 대하여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63.6%
 - 인력수급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36.0%,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0.4%에 불과
- 중소기업의 현재 근무인원은 평균 24.84명이며, 부족인원은 업체당 2.65명(인력부족률 9.6%)
 - 사무직의 인력부족률은 3.0%인데 비해, 생산직의 경우 11.7%로 생산직의 인력부족 현상이 훨씬 심각

12) 문화컨텐츠, 통신, 반도체, 로봇, 항공, 나노, 바이오, 환경 산업 등

13) 이하 중소기업관련 내용은 2013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2013, 중소기업중앙회)의 결과를 인용한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소분류 80개 업종(조사업체 수 5개 미만 업종은 업종 통계에서 제외)중에서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 ①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이 23.91%
- ②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서비스업) 23.65%,
- ③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2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5] 직종별 인력 부족률

구분	현재 인원(명)	부족 인원(명)	인력 부족률(%)
사무직	5.59	0.17	3.0
생산직	18.52	2.45	11.7
기타인력	0.75	0.03	3.8
총계	24.84	2.65	9.6

참조: 인력 부족률(%) = 부족 인원/(현재 인원+부족 인원)×100

출처: 2013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3)

-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

- ① 임금, 복지수준 등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라는 응답이 52.6%
- ② 장래성,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내국인의 잦은 이직 27.8%
- ③ 내국인의 잔업, 휴일업무 거부 9.9%
- ④ 입지 상 인근마을이 없거나 오지에 위치하여 내국인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3-6]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

(단위: %)

구분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	잦은 이직	잔업휴일 업무거부	입지상 오지	기피업종	기타
1규모(1~5인)	53.0	29.5	8.4	5.7	2.0	1.5
2규모(6~10인)	51.5	28.9	11.1	6.0	1.9	0.7
3규모(11~50인)	53.0	26.3	11.0	5.1	1.4	3.2
4규모(51~100인)	57.1	26.4	7.1	6.4	0.0	2.9
5규모(101~200인)	55.1	20.5	2.6	12.8	1.3	7.7
6규모(201~300인)	36.7	40.0	3.3	10.0	0.0	10.0
총계	52.6	27.8	9.9	6.0	1.6	2.2

출처: 2013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3)

-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유

- ① 인력난 완화라는 응답이 81.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 ② 국내 근로자보다 순응적인 업무태도 9.4%
- ③ 저렴한 임금 8.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산업기술인력 부족¹⁴⁾

-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현원은 1,461,902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34.8% 비중을 차지

-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제조업 분야 현원은 1,035,092명으로 70.8%
- 제조업 중 12대 주력산업 분야¹⁵⁾ 현원은 990,615명으로 67.8%
-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현원은 291,284명으로 19.9%

- 부족인원: 38,926명으로 부족률은 2.6%

[표 3-7] 산업기술인력 현원·부족 인원

(단위: 명, %)

총 근로자 수(a)	산업기술인력 수(b)	산업기술인력 비중(b/a)	부족 인원 수	부족률
4,204,514	1,461,902	34.8	38,926	2.6

참조: 부족 인원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부족률 = {부족 인원/(현원+부족 인원)}×100

출처: 2013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3)

-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38,926명, 부족률은 2.6%로 전년대비 0.8%p 하락
 - * 부족률 변화: ('09) 5.2% → ('10) 4.3% → ('11) 3.4% → ('12) 2.6%
- 산업기술인력의 부족 인원은 제조업이 28,947명으로 74.4% 비중 차지
 - * 12대 주력산업 부족 인원은 28,390명으로, 전체 부족 인원 중 72.9%
 - * 세부업종별로는 SW산업(5,462명), 기계산업(4,931명), 전자산업(4,664명), 화학산업(4,416명) 등의 순
- 제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전체 평균보다 소폭 높은 2.7% 기록
 - * 12대 주력산업의 부족률은 2.8%를 기록
 - * 12대 주력산업 중에는 SW(4.4%)이 높고,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1.1%), 조선(1.2%)의 부족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14) 이하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의 결과를 인용한 것임.

15)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SW, IT 비즈니스

- 미충원 인원 현황

-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4,377명으로 나타남.
- 미충원 인원은 72.3%가 제조업에서 발생. 이중 12대 주력산업은 10,649명으로 전체 미충원 인원 중 74.1%

(2) 인구구조 변화와 거시 경제적 귀결

1) 사회적 부양비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과 어린이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

-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17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¹⁶⁾

[표 3-8] 일본 및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	도달 예상연도			증가 소요연수(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7	2026	17	8

주: 고령화사회: 만 65세 노인인구비율 7%, 고령사회: 노인인구비율 14%, 초고령사회: 노인인구비율 20% 이상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Ageing 2002.
 (http://www.un.org/esa/ population/index.html), 한국은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⁷⁾은 1.3명으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낮

16)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17)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은 수준임.

-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01명(노인 80.6명과 어린이 20.5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
- 2010년까지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많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에 40.7명에서 2060년에 80.6명으로 2배 증가할 전망

[표 3-9] 노인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 전망

(단위: %)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65세이상	7.2	11.0	15.7	24.3	32.3	37.4	40.1
노년부양비	10.1	15.2	22.1	38.6	57.2	71.0	80.6
유소년부양비	29.4	22.2	18.6	20.0	19.8	18.9	20.5
총부양비	39.5	37.3	40.7	58.6	77.0	89.8	101.0

주: 노년부양비 = $100 * (65세\ 이상\ 인구) / (15세 \sim 64세\ 인구)$, 유소년부양비 = $100 * (0세 \sim 14세\ 인구) / (15세 \sim 64세\ 인구)$

총부양비 = $100 * (0 \sim 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세 \sim 64세\ 인구)$

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2) 잠재성장률 하락

▶ 인구구조의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자본이 더디게 축적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0%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겠지만, [표 3-10]에서 보듯이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여 2050년대 후반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
- 투입요소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예정되어 2060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87%까지 확대될 전망
- 고령화로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2040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하면서 2051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의미함.

[표 3-10]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단위: %)

	성장률	TFP	요소투입	투입요소	
				자본투입	노동투입
2016~2020	3.40	1.50	1.92	1.38	0.54
2021~2025	3.00	1.20	1.76	1.31	0.45
2026~2030	2.50	1.20	1.25	1.26	-0.01
2030~2035	2.20	1.20	0.99	1.14	-0.15
2036~2040	2.10	1.20	0.86	1.04	-0.18
2041~2045	1.80	1.20	0.61	0.91	-0.30
2046~2050	1.50	1.20	0.33	0.79	-0.46
2051~2055	1.20	1.20	-0.01	0.68	-0.69
2056~2060	0.90	1.20	-0.29	0.58	-0.87

자료: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3) 외국인 정책과 이주 현황

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이민정책은 제2차 외국인정책이 기본

*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서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정부는 각 부처별로 분산·추진되던 다양한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해 왔음.

- 2012년에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비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 및 자동출입국 심사기반 확대, 우수 인재 온라인 비자 발급 등 29개 과제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가칭) 마련 추진,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등 40개 과제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등 29개 과제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기초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등 불법체류자 단속 체제 다변화 등 26개 과제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 등 22개 과제

▶ 기본계획 시행의 문제점: control tower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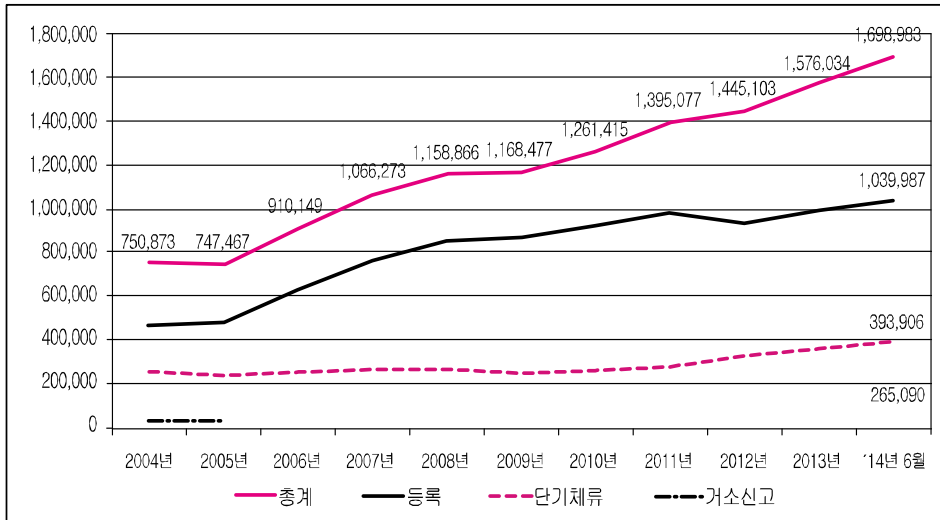
- ‘기본계획’ 자체가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추진되던 다양한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중복 시행과 갈등 소지가 있음.
- 즉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control tower가 부재

2) 국내 체류 이주자 현황

▶ 2014년 6월 현재, 약 170만 명

- 작년 6월 말에 비해 17.6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10여년 전인 2003년의 67.9만 명에 비해 102.0만 명이 늘어난 수치
-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약 9.0%
- 이러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2016년에는 200만 명, 2021년에는 300만 명, 2027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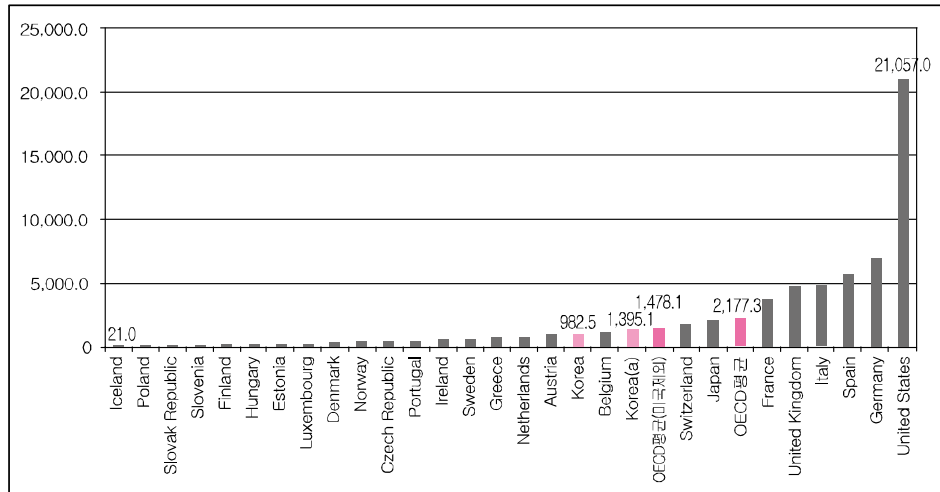
[그림 3-4] 체류 이주자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계, 각 년도

[그림 3-5] OECD국가와 한국의 체류 이주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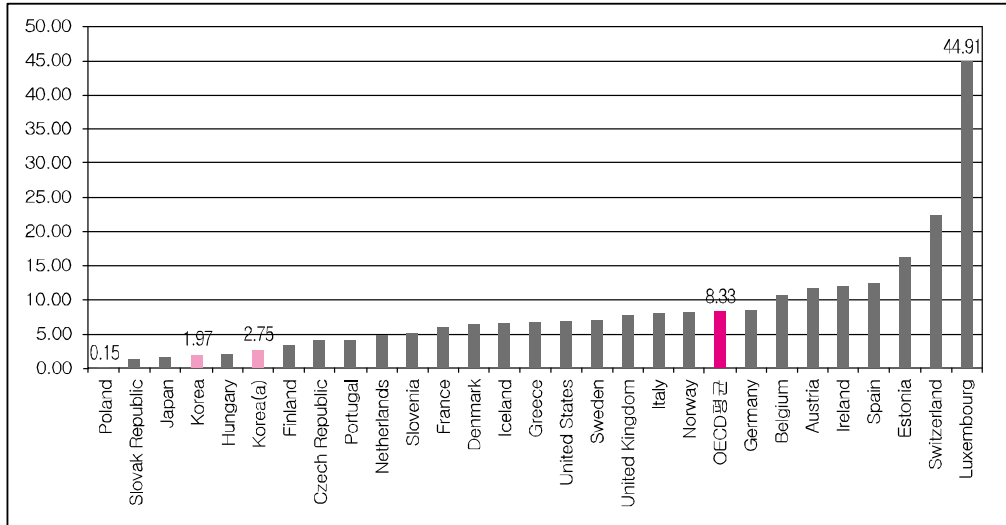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출처: OECD자료는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한국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월간통계 2012.12월호
 참조: 그림에서 Korea는 OECD자료로 체류외국인 중에서 등록된 자만을 의미하며, Korea(a)는 총 체류외국인 수(법무부)를 의미함.

[그림 3-6] OECD국가와 한국의 체류 이주자 비율 비교

(단위: %)



출처: OECD자료는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한국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월간통계 2012.12월호
 참조: 그림에서 Korea는 OECD자료로 체류외국인 중에서 등록된 자만을 의미하며, Korea(a)는 총 체류외국인 수(법무부)를 의미함.

- ▶ 국내 체류외국인(이주자) 수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림 3-5]와 같음.
 - 국제비교가 가능한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982.5천 명의 체류외국인이 있음.
 - 이 자료는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류외국인(1,395.1천 명)과는 괴리가 있음.
- ▶ 내국인 대비 체류외국인 수 비율을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림 3-6]과 같음.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1.97%로 OECD 평균보다 6.36%p가 낮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료는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류외국인 비율보다는 5.58%가 낮음.
 -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일본 정도임.
- ▶ 국내사증 종류는 36개의 기본 분류 하에 160개의 하위 사증이 있음.
 -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36개 사증으로 크게 분류

[표 3-11] 체류자격 유형

계열	체류자격(기호)
A	1. 외교(A-1) 2. 공무(A-2) 3. 협정(A-3)
B	4. 사증면제 (B-1) 5. 관광·통과 (B-2)
C	6. 일시취재(C-1) 8. 단기방문(C-3) 9. 단기취업(C-4)
D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12. 기술연수(D-3) 13. 일반연수(D-4) 14. 취재(D-5) 15. 종교(D-6) 16. 주재(D-7) 17. 기업투자(D-8) 18. 무역경영(D-9) 18의2. 구직(D-10)
E	19. 교수(E-1) 20. 회화지도(E-2) 21. 연구(E-3) 22. 기술지도(E-4) 23. 전문직업(E-5) 24. 예술흥행(E-6)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F	26. 방문동거(F-1) 27. 거주(F-2) 28. 동반(F-3) 28의2. 재외동포(F-4) 28의3. 영주(F-5) 28의4. 결혼이민(F-6)
G	29. 기타(G-1)
H	30. 관광취업(H-1) 31. 방문취업(H-2)

출처: 출입국관리법(제12조관련)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10.10>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인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임.
- 취업자격 다음으로 많은 체류이민자 집단은 재외동포(F-4)로 2014년 6월 말 현재 267,984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1,637명이 늘어남.
- 세 번째 많은 집단은 단기방문(C-3)자로 1년 전인 2013년 6월 말에 비해 2,431명이 늘어난 145,846명이 체류
- 결혼이민자(F-6)는 4번째로 큰 체류이민자 집단으로 1년 전에 비해 17,966명이 늘어난 120,490명이 체류
- 다섯 번째로 많은 집단인 영주권 취득자(F-5)는 2014년 6월 말 현재 1년 전에 비해 14,154명이 늘어난 106,975명이 체류
- 유학생은 2014년 6월 말 현재 79,52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유학(D-2)은 3,441명이 감소하고, 어학연수(D-4)는 1,71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1,727명이 감소(-2.1%)

[표 3-1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 6월 총체류자	2014년 6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1,522,554	1,698,983	1,511,643	187,340
사증면제(B-1)	41,065	65,601	39,874	25,727
관광통과(B-2)	93,025	99,209	83,424	15,785
단기방문(C-3)	143,415	145,846	100,781	45,065
단기취업(C-4)	901	876	724	152
유 학(D-2)	61,386	57,945	55,585	2,360
기술연수(D-3)	3,731	3,493	1,396	2,097
일반연수(D-4)	21,723	23,430	18,442	4,988
종 교(D-6)	1,630	1,813	1,753	60
상사주재(D-7)	1,638	1,660	1,636	24
기업투자(D-8)	6,467	6,059	5,498	561
무역경영(D-9)	7,093	8,740	8,697	43
교 수(E-1)	2,765	2,725	2,710	15
회화지도(E-2)	20,830	18,723	18,645	78
연 구(E-3)	2,823	3,028	3,016	12
기술지도(E-4)	211	194	192	2
전문직업(E-5)	676	667	640	27
예술흥행(E-6)	4,762	5,086	3,514	1,572
특정활동(E-7)	17,630	18,225	14,839	3,386
비전문취업(E-9)	238,271	258,018	204,510	53,508
선원취업(E-10)	11,363	12,668	8,061	4,607
방문동거(F-1)	57,727	64,849	60,440	4,409
거 주(F-2)	51,080	38,319	29,634	8,685
동 반(F-3)	19,248	20,519	20,002	517
재외동포(F-4)	211,138	267,983	266,346	1,637
영 주(F-5)	92,641	106,795	106,795	0
결혼이민(F-6)	102,524	120,490	118,254	2,236
방문취업(H-2)	238,245	274,250	267,708	6,542
기 타	68,546	71,772	68,527	3,245

출처: 법무부, 출입국월간통계 2014.6월호

3) 취업자격 이주자 현황(총괄)

▶ 2014년 6월 말 현재 총 594,460명(합법 524,559명, 불법 69,901명)이 국내에 체류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전문외국인력과 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 나누어지는데, 2014년 6월 말 현재 각각 49,524명과 544,936명임.
- 전문외국인력은 단기취업(C-4)과 E-1~7 사증 소지자¹⁸⁾로 소분류되며, 단순기능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하의 비전문취업 사증(E-9)과 방문취업사증(H-2) 및 선원취업사증(E-10)으로 구성
- 전문외국인력은 1년 전인 2013년 6월 말에 비해 1,074명이 감소: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전문외국인력은 회회지도사증(E-2) 소지자로 2,107명이 감소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전문인력은 특정활동사증(E-7) 소지자로 595명이 증가
- 단순기능외국인력은 1년 전에 비해 64,657명이 증가하였으며, 비전문취업자는 53,508명, 선원취업자는 152명, 방문취업자는 6,542명으로 증가

[표 3-13] 취업자격 체류 이주자 총괄 현황

(2014.06.30.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594,460	49,524	544,936
합법체류	524,559	44,280	480,279
불법체류	69,901	5,244	64,657

출처: 법무부, 출입국월간통계 2014.6월호

[표 3-14] 자격별 현황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94,460	524,559	69,901
전문 인력	소 계	49,524	44,280	5,244
	단기취업(C-4)	876	724	152
	교 수(E-1)	2,725	2,710	15
	회회지도(E-2)	18,723	18,645	78
	연 구(E-3)	3,028	3,016	12
	기술지도(E-4)	194	192	2
	전문직업(E-5)	667	640	27
	예술흥행(E-6)	5,086	3,514	1,572
	특정활동(E-7)	18,225	14,839	3,386
단순 기능 인력	소계	544,936	480,279	64,657
	비전문취업(E-9)	258,018	204,510	53,508
	선원취업(E-10)	12,668	8,061	4,607
	방문취업(H-2)	274,250	267,708	6,542

출처: 법무부, 출입국월간통계 2014.6월호

18) 교수(E-1), 회회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표 3-15] 비자별 외국인의 경제활동

구분	연도	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15세 이상 외국인	2012	111.4	23.9	28.7	4.8	8.3	16.0	7.3	12.9	9.6
		(100.0)	(21.5)	(25.8)	(4.3)	(7.5)	(14.4)	(6.6)	(11.6)	(8.6)
	2013	112.6	22.6	23.4	4.8	8.2	20.4	8.8	12.9	11.4
		(100.0)	(20.1)	(20.8)	(4.3)	(7.3)	(18.1)	(7.8)	(11.5)	(10.1)
경제활동 인구	2012	82.4	23.8	25.4	4.7	1.7	10.3	5.0	6.5	4.9
		(100.0)	(28.9)	(30.8)	(5.7)	(2.1)	(12.5)	(6.1)	(7.9)	(5.9)
	2013	79.3	22.6	19.7	4.8	1.2	13.2	6.2	6.2	5.4
		(100.0)	(28.5)	(24.8)	(6.1)	(1.5)	(16.6)	(7.8)	(7.8)	(6.8)
취업자	2012	79.1	23.8	24.1	4.7	1.3	9.9	4.7	6.0	4.5
		(100.0)	(30.1)	(30.5)	(5.9)	(1.6)	(12.5)	(5.9)	(7.6)	(5.7)
	2013	76.0	22.6	18.6	4.8	1.1	12.4	5.8	5.8	5.0
		(100.0)	(29.7)	(24.5)	(6.3)	(1.4)	(16.3)	(7.6)	(7.6)	(6.6)
실업자	2012	3.3	0.0	1.3	0.0	0.4	0.4	0.3	0.5	0.4
		(100.0)	(0.0)	(39.4)	(0.0)	(12.1)	(12.1)	(9.1)	(15.2)	(12.1)
	2013	3.3	0.0	1.1	0.0	0.1	0.8	0.4	0.4	0.4
		(100.0)	(0.0)	(33.3)	(0.0)	(3.0)	(24.2)	(12.1)	(12.1)	(12.1)
비경제 활동인구	2012	29.0	0.0	3.3	0.0	6.6	5.7	2.3	6.3	4.7
		(100.0)	(0.0)	(11.4)	(0.0)	(22.8)	(19.7)	(7.9)	(21.7)	(16.2)
	2013	33.3	0.0	3.7	0.0	7.0	7.2	2.7	6.7	6.0
		(100.0)	(0.0)	(11.1)	(0.0)	(21.0)	(21.6)	(8.1)	(20.1)	(18.0)
경제활동 참가율	2012	74.0	99.9	88.5	99.4	20.1	64.5	68.9	50.8	51.1
	2013	70.4	99.9	84.2	99.3	15.0	64.7	69.7	48.3	47.1
고용률	2012	71.0	99.8	84.1	99.4	15.6	61.9	64.7	46.9	46.8
	2013	67.5	99.7	79.3	98.9	13.2	60.8	66.1	44.9	43.8
실업률	2012	4.0	0.0	5.1	0.0	23.5	3.9	6.0	7.7	8.2
	2013	4.2	0.0	5.6	0.0	8.3	6.1	6.5	6.5	7.4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2012 및 2013 <http://kosis.kr>

참조: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 비자별 외국인의 경제활동

- 비자 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2-1, F-6), 기타 등등으로 나눠짐.
- 15세 이상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자소지자는 방문취업자로

2012년에는 전체의 25.8%, 2013년에는 20.8%를 차지하였으며, 비전문취업(E-9) 역시 2012년 21.5%, 2013년 20.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순

- 2년간(2012~2013)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방문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진(4.0%p 감소) 반면 재외동포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3.7%p가 증가하였다는 것임.
 - 한편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에 반영되어 15세 이상의 인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
 -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 중 방문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6.0%p 감소한 반면 재외동포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4.1%p가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의 경우 동기간에 방문취업자는 3.0%p 감소한 반면, 재외동포는 3.8%p 증가
- 이러한 변화는 절대적 수치의 변화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과는 다를 수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3.6%p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방문취업자,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비경제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고용률의 경우 동기간에 3.5%p가 감소하였는데, 이것 역시 방문취업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고용률이 낮았기 때문임.

4) 일반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 근로자¹⁹⁾

▶ 법적 근거

- 2003년 8월 16일에 제정 공포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시행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4년 3월에 총 79,000명(고용허가제 25,000명, 취업관리제 16,000명, 산업연수제 38,000명)의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 발표하였고, 2004년 8월 31일 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²⁰⁾
 - 2003년부터 제조업(E-9-2), 건설업(E-9-3), 농축산업(E-9-4), 냉장냉동(E-9-6), 음식업(E-9-A), 청소업(E-9-B) 등으로 사증이 분류되기 시작하였음.

19) 이하는 '2014 한국의 이주동향'에서 발취 요약한 것임.

20) 출처: <http://www.eps.go.kr>

▶ 대상국가

- 송출국가는 2004년 6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여, 2006년 3개국을 추가(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하였고, 2007년에는 5개국(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 미얀마), 2008년에는 동티모르를 추가함으로써 2014년 6월 말 현재 15개국

▶ 외국인력 허용업종

- 2004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일부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어업이 추가
- 2006년과 2008년에 서비스업분야가 부분적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이후 5개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룸.

▶ 허용취업활동기간

- 2004년 3년 만기 귀환으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5월부터 '3년+3년(중간에 1개월 출국)'으로 전환하였고,
- 2009년 12월에 '3년+1년 10개월 연장'으로 변경. 2012년 7월에 현재의 재입국제도, 즉 '4년 10개월 + 요건충족 시 4년 10개월 추가(중간에 3개월 출국)'안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룸.
- 재취업 조건: 사업장 변경 없이 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한 자와 50인 이하 제조업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임.

▶ 작업이동의 조건

- 법에서 규정된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이동은 3회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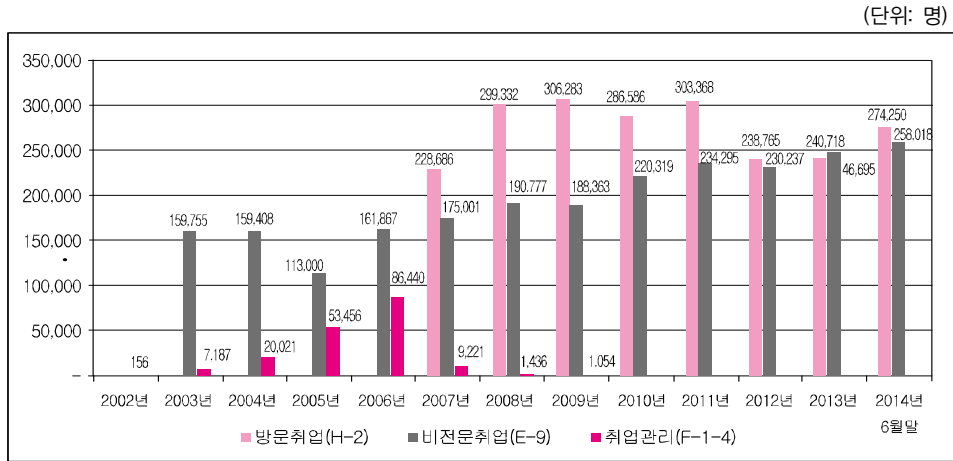
▶ 비전문 취업자의 추이

- 2003년에 처음으로 비전문취업(E-9)에 대한 통계가 시작되었으며, 159,755명이 이 사증을 받음.
- 2003년부터 약 16만 명에 이르는 비전문취업자에 대한 통계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관련이 있음.
▪ 2002년 당시, 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외국인력은 해외투자 기업 산업연수(D-3)와 연수취업(E-8)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각각 96,857명,

18,609명, 2003년에는 95,676명, 28,761명이었음.

- 2003년 단순기능외국인력으로 분류되는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가 159,755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총 체류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을 허용함으로써 2년 후인 2005년 비전문취업자의 수는 대폭 감소

[그림 3-7] 2002년~2014년 단순기능인력 국내 체류 현황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각 년도 통계

[표 3-16]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인원 결정 내역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형태별	일 반(E-9)	25,000	14,300	34,7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46,000	52,000	47,400
	산업연수생			3,200								
	재입국자									10,000	5,600	
직종별	제조업	17,000	12,000	30,600	42,100	60,800	13,000	28,100	40,000	49,000	52,000	42,250
	건설업	6,000	1,000	100	4,400	6,000	2,000	1,600	1,600	1,600	1,600	6,000
	서비스업		300	250	200	400	100	100	150	150	100	2,300
	농축산업	2,000	1,000	1,500	1,900	4,000	1,000	3,100	4,500	4,500	6,000	2,350
	어업			2,300	1,000	800	900	1,100	1,750	1,750	2,300	100
총 계	24,000	14,300	37,9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46,000	62,000	53,000	

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 eps.go.kr

참조: 재입국자=성실 근로자 재입국 (3개월 후 입국)+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6개월 후 입국)

- 2010년부터 해외투자(D-3-1)를 제외하고 비전문취업(E-9)으로 통합되어 발표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도입규모의 감소(2008년 74,000명에서 2009년 34,000명)에 따라 비

전문취업자 전체 수가 2009년 감소하였으나, 2010년 도입규모의 증가(2009년 17,000명에서 2010년 34,000명)와 더불어 비전문취업자의 수가 증가²¹⁾

- 2012년에는 다시 비전문취업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비전문취업자의 비자 기간과 관련이 있음: 2008~9년 대폭으로 유입되었던 비전문취업 외국인력의 '3년+1년 10개월 연장' 기한이 도래하여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임.
-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 6월 현재, 총 체류자는 258,018명으로 고용허가제 시작 연도 2004년의 159,408명에 비해 98,610명이 증가 상태임.

▶ 2014년 기준으로 출신국별 외국인 수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순
- 지난 7.5년간 가장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미얀마로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네팔이 24.8배, 캄보디아가 21.5배, 방글라데시가 9.8배 증가한 반면 중국, 태국, 몽골 등은 감소하였음.

[표 3-17]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E-9) 추이

(단위: 명, 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6.5년간 증가배율
								명	비율	
베트남	30,703	41,158	45,188	55,795	62,416	58,699	50,488	48,387	19.6%	1.6
인도네시아	15,711	22,079	21,244	24,732	26,338	26,139	29,029	31,552	12.8%	2.0
캄보디아	1,352	4,158	5,288	7,383	11,825	18,580	25,281	29,019	11.8%	21.5
스리랑카	9,424	12,853	13,189	16,924	19,820	20,175	21,093	22,338	9.1%	2.4
필리핀	23,400	21,882	21,312	26,217	24,264	16,949	20,632	22,300	9.0%	1.0
태국	23,776	24,890	23,891	24,244	22,412	18,031	22,434	22,157	9.0%	0.9
네팔	828	2,711	4,444	7,217	10,389	15,410	18,236	20,493	8.3%	24.8
우즈베키스탄	3,386	6,803	7,444	11,837	13,373	15,414	16,407	17,073	6.9%	5.0
미얀마	124	1,154	2,173	2,753	4,431	7,122	10,581	12,349	5.0%	99.6
방글라데시	977	2,470	2,930	7,586	8,661	9,037	9,177	9,610	3.9%	9.8
몽골	11,691	11,680	10,942	12,398	10,897	9,136	8,654	8,184	3.3%	0.7
중국	11,645	9,372	6,927	15,530	12,457	8,895	7,975	7,720	3.1%	0.7
파키스탄	2,776	3,911	4,238	5,569	4,700	4,020	4,002	4,105	1.7%	1.5

참조: 2009 및 2008년 자료의 경우 E-9-1(합법조치)과 E-9-A~Z(고용특례: 중국인 해외교포에게 발급된 E-9 사증)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계, 각 년도

21) 산업연수생은 2009년 11,307명으로, 해외투자(4239명)를 제외한 9,086명의 대부분이 그 다음해인 2010년에 비전문취업으로 통산됨.

5) 방문취업제도(특별고용허가제도) 하의 재외동포²²⁾

▶ 법적 근거

-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2002년 11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외동포들을 위한 ‘취업관리제도’이며, 방문취업제도의 시발점
-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시행함에 따라 취업관리제도는 고용허가제에 흡수되었음.

▶ 국내 취업 가능대상자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2003.5.10, 연령 30세로 조정)의 외국국적 동포로 한정
 - 재외공관을 통해 방문동거사증(F-1-4)을 받아 입국한 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신청하면 되는데, 이 사증으로 2년간(1년마다 갱신)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음.²³⁾

▶ 해외동포 근로자의 추이

- 2002년 겨우 156명에 불과하였던 해외동포의 수가 이듬해인 2003년에 취업관리제도의 시행에 의해 그해에 7,187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86,440명으로 늘어남.
 - 취업관리제도 하의 해외동포 수는 방문취업제에 시행에 따라 2009년에는 1,054명으로 감소되었고, 201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짐.
- 초기의 해외동포 취업제도에는 중국과 구소련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에 배제(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되어 동포 간 차별문제를 불러옴.
 - 이것은 중국 등의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었음.
 - 이에 법무부가 주관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22) 이하는 ‘2014 한국의 이주동향’에서 발취 요약한 것임.

23) 구인 가능 사업체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간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였다.

거처 방문취업제가 추진

- 여기에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복수사증(H-2)을 발급하며,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업종(단순노무분야) 체류자격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18] 방문취업제 쿼터(quota) 변화 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2014	0	-	-	-	-	-
2013	0	-	-	-	-	-
2012	0	-	-	-	-	-
2011	0	-	-	-	-	-
2010	0	-	-	-	-	-
2009	17,000	10,000	0	5,900	1,000	100
2008	60,000	16,000	12,000	30,600	1,000	400
2007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200
2006	38,050	13,100	5,600	18,650	500	200
2005	3,700	-	2,000	1,700	-	-
2004	16,000	-	12,000	4,000	-	-

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kr/sub/sub03_01_02_contents.jsp에서 재구성

- 2007년 방문취업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 및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사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²⁴⁾
- 또한 그 동안 모국 입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던 한국에 친척 등의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게까지 한국 입국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인수도 급증하여 2007년 초기 228,686명에서 제도 시행 불과 2년 만인 2009년에 30만 명을 상회하게 됨.²⁵⁾
-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9년 3월에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전체 외국인력 쿼터규모에 포함시키는 사증발급총량제(30.3만 명)를 도입함.

24) 단,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25) 2007년 최초로 방문취업제하의 국내 해외 동포근로자의 수가 집계되었는데, 여기에는 취업관리제도하의 해외동포들이 포함되어 있다.

▶ 도입규모 추이

- 2008년의 경우 연고 동포 3만 명, 무연고 동포 3만 명 등 총 6만 명의 책정되었으나, 2009년에 이를 대폭 축소하여 연고 및 무연고 동포를 통합하여 1만 7천명으로 제한
- 법무부에서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1인당 초청 가능한 동포 친인척 인원을 1인당 3명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이어서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인력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2012년에는 237,765명까지 감소
 - 이러한 감소에는 상당수의 방문취업 동포가 재외동포(F-4)로 전환(2009년 5천 명에서 2014년 6월 말 19만 명)한 것도 한 몫을 함.

▶ 국적별 현황

- 2014년 6월 말 현재 2012년 보다는 많이 증가한 274,250명의 해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은 대부분 중국출신(94.7%)이며, 남성 56.2%, 여성 43.8%로 구성되어 있음.²⁶⁾

[표 3-19] 방문취업제 국적별 체류현황

(단위: 명)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226,743	294,344	299,796	277,928	293,132	227,797	228,249	259,693
우즈베키스탄	718	2,820	3,911	5,958	7,610	8,950	10,223	12,233
러시아	1,089	1,861	2,094	2,041	1,932	1,031	564	455
카자흐스탄	-	-	351	452	465	584	702	905
기타	136	307	131	207	229	403	640	964
총계	228,686	299,332	306,283	258,586	303,368	238,765	240,178	274,250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계, 각 년도

26) 2013년 5월, 통계청 조사결과, 방문취업 동포(234천 명)중 약 80% (186천 명=남 111천 명, 여 75천 명)가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됨.

6) 전문 외국인력²⁷⁾

▶ 국내전문인력제도

- 많은 나라들이 Green card제, Blue Card제, Point System(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Preference System(미국) 등 이민자 선별 메커니즘을 개발 발전시키려는 추세임.
- 우리나라 역시 우수인재 확보전략과 인구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브레인 풀(Brain Pool) 사업:²⁸⁾ 과학기술부가 1994년 2월부터 해외유학자 초정을 위한 처음 시도한 전문기술외국인 우대조치로 IT 및 첨단과학자 초정을 위한 Gold Card 사업(2000년 11월),²⁹⁾ 국내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기술인력 유치 및 고용을 지원하는 사이언스카드제도(2001년 12월) 등을 시행해 오고 있음.³⁰⁾
 - 해외고급인력기술도입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의 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해오고 있음.³¹⁾
 - Contact KOREA: 글로벌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국가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으로 2008년부터 Contact KOREA(글

27) 이하는 '2014 한국의 이주동향'에서 발취 요약한 것임.

28) 1993년 7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 부문으로 수립된 이 제도의 목적은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 기술자를 조직적으로 초빙 활용하고, 연구개발단계의 최신과학기술 및 know-how 등을 조기에 습득함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연구개발 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들의 핵심기술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1993년 7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 부문의 하나로 해외 고급과학도뇌 유치·활용 (Brain Pool)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1994년 2월부터 기초,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화공·생명과학, 자원·해양, 에너지 분야에 해외교포과학자를 초청해오고 있다(1994년 57명, 2012년 81명).

29)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기업이 해당 분야의 해외 기술인력을 유치할 경우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절차 등 출입국에 필요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6년 생명과학기술(BT), 디지털가전기술, 신소재기술, 환경·에너지기술, 수송기계기술 등 6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7년 2월에는 특혜비자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구 IT카드를 골드카드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조회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IT CARD는 정보통신부와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수행기관으로 IT분야 외국우수기술인력의 고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장에 의해 발급되었다.

30) 외국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 취득과 체류관련(자력, 활동, 기간 등) 허가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대상 및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기업부설(연)에 근무하고자 하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31)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기술인력 도입 소요비용(체재비, 입국항공료)을 해당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로별 전문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세계적 우수인재,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전 세계 100개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발굴부터 비자추천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³²⁾

- 점수제(Point System): 법무부는 국내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전문인력(E-1~E-7)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들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역량과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전문인력³³⁾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³⁴⁾
- 전문취업 자격부여 제도: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시작한 제도임.³⁵⁾

▶ 외국인 전문인력 기준

- 법무부에 분류기준에 의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등으로 구분됨.

▶ 외국인 전문인력 현황

- 2014년 6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외국인력은 49,524명임
- 회화지도(E-2)와 예술홍행(E-6)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전문인력은 25,715명이며, 이 중에서 특정활동(E-7)이 18,22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구인력 3,028명, 교수 2,725명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3-8] 참조).

32) Contact KOREA 포털사이트를 통해 세계 우수 인재의 이력서를 신속히 제공하며 학력 및 이력 검증 서비스, On-Line 화상 채용 인터뷰 주선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3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자료:법무부고시 제11 - 384호)

34) 2008년 4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의 일환으로 점수제 도입계획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고 2009년 12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였다. 점수제 평가내용은 공통 항목으로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이 있으며, 가점항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등이 있고, 감점항으로는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 있다. 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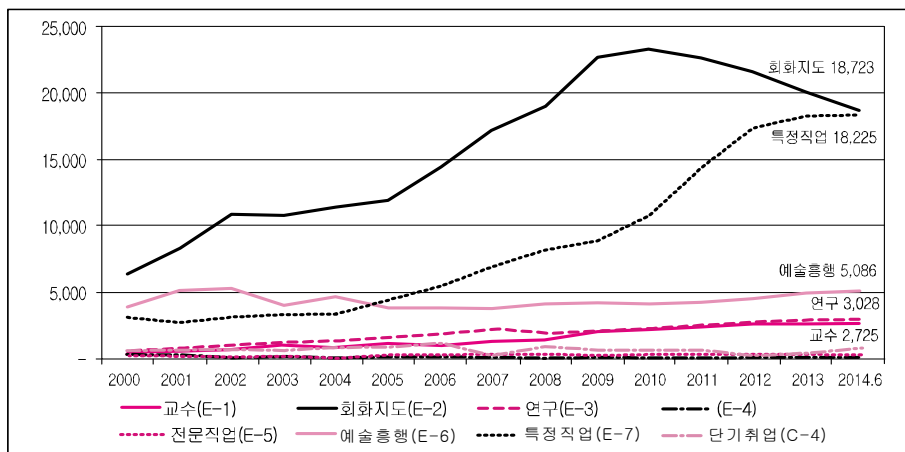
35) 신청자격 요건은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적인 취업을 한 경우. (2) 35세 미만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 (3)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을 받은 경우.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표 3-20] 전문인력 사증종류 및 현황(2014년 6월 말 기준)

구분	체류자격 해당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단기취업 (C-4)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활동,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자, 자연과학분야연구, 방위산업체 관련, IT, BT, NT, 신소재 등 전문기술 혹은 지식인	90일
교수 (E-1)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년
연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6개월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IT CARD(정통부), GOLD CARD(산자부), SCIENCE CARD(과학기술부)]	2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그림 3-8] 외국인 전문인력 추이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계, 각 년도

- 외국인 전문인력의 추이를 보면 회화지도의 경우, 2000년 6,141명으로 시작하여 2010년 23,317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전문외국인력의 최대비율인 37.8%를 차지하고 있음.
- 특정직업(E-7)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전체 전문외국인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현재 18,225명으로 2000년 3,143명에 비해 5.8배나 증가하였음.
- 예술흥행은 2002년 5,28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3,781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 6월 말 현재에는 5,086명으로 전체 외국인력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 연구(E-3)는 2000년 763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6월 말 3,028명에 이르렀고,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E-1) 또한 2000년 687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6월 현재 2,725명으로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2000년 16,225명이었던 전문외국인력이 2002년 22,610명으로 증가한 뒤 2003년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0,264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하였음.

(4) 취업자격 이민제도의 현주소 및 평가³⁶⁾

▶ 전문인력의 현주소 및 평가

-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허용
 - 정보·지식의 시대는 상품보다는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Human capital 및 이들과의 네트워크가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임.
- 지금까지의 전문 인력정책은 체류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전문기술 직종에 대한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들은 출입국의 편리를 위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들의 출입국이 편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 체류관리의 선진화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출입국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져 그 실효성이 없음.

36) 본장에서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제도에 대한 현주소와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

- 제도개선 실적 대비 우수인재 유치 실적 미흡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정부에서 비자제도와 체류제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이민정책에 적용
 - 전문인력에 대한 재분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리스트가 요구됨(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 사증발급 절차 및 연장 등의 복잡성
 - 2010년 법무부 실태조사(강동관 외, 2010)에 의하면 코스피 기업의 경우 사증발급·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에 4.28점(5점 만점), 사증연장 절차의 간소화에 4.23점으로 각각 1, 2위 순위이었으며, 코스닥기업의 경우에도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에 4.05점(5점 만점)과 사증연장 절차의 간소화에 4.00점으로 각각 1, 2위 순위로 나타남.
 - 전문 외국 인력을 채용할 때 어렵게 만든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채용비의 과다와 채용담당 전문인력 및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다음으로 및 사증 및 출입국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지적함.
- 우리나라 역시 체류자격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상술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기술인력으로 분류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음.
 - 예를 들면, 전문인력 중 회화지도, 예술홍행, 단기취업자를 전문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더불어 E7 사증 취득자 중 주방장과 조리사,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를 전문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의문
 - 이러한 직종을 높은 지식과 학력 및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로 간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

▶ 단순인력제도의 현주소 및 평가

-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단기순환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 정주화하지 않게 함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인력유치정책 지속

-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계획상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단순기능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재외동포에 대한 쿼터는 2010년부터 303,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포를 우대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
- 고용허가제도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인권신장에 기여해 왔으나,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있음.
- 구조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
- 단기적인 인력부족상황만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실업률, 유휴인력),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고려 미흡
- 장기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외국인력 적정규모 추정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행정통계 미비
- 허용취업활동기간의 변경도 국내의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법체류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비판



제4장 이민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방법

(1) 분석모형

▶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 활용

- 본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CGE 모형을 구축하고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³⁷⁾
 - 가계는 소비와 여가를 통해 효용을 얻고 예산제약 하에 시점 간 효용함수(2013년~2016년)를 극대화하는 경제주체로 가정함.
 - 산업은 이윤극대화 주체로서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가계와 해외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노동과 자본의 사용대가로 지불한다고 가정함.
 - * 생산함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일치시키기 위해 콥더글라스 함수로 가정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이민자는 노동을 공급하여 소득을 얻고 이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송금한다고 가정하였음.
 - 본 분석에서의 ‘이민’은 정주형 이민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구축적 효과가 미약한 한정적 기간 동안의 체류 외국인도 이민자로 고려하지 않음.
 - 본 연구는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수입과 지출 행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입력데이터

▶ 사회회계행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13년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회계행렬

37) 본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Remsey 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한 것으로 수식을 통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SAM)을 구축하고 입력데이터로 활용함.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생산은 중간재화 없이 노동, 자본, 지적자본만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는 가계소비, 투자, 수출로 판매된다고 가정함.³⁸⁾
- 이민자의 송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국개방모형을 가정하였으며, 또한 수입액과 수출액이 동일하게 설정하여 매기 무역수지균형이 달성된다고 가정하였음.
 - * 수입재화는 가계에서 소비되는 국내재화와 불안전대체관계를 통해 아밍톤복합재화가 형성되어 전량 가계의 소비재화로 판매됨.
 - * 이민자의 송금액이 증가하면 환율이 변동하여 무역수지균형이 달성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음.

[표 4-1] 사회회계행렬(2013년)

(단위: 조 원)

	Y	L	K	TFP	CON	INV	EXP	IMP	ROW	TOTAL
Y	0.0	0.0	0.0	0.0	728.9	423.6	275.8	0.0	0.0	1,428.3
L	624.3	0.0	0.0	0.0	0.0	0.0	0.0	0.0	0.0	624.3
K	664.0	0.0	0.0	0.0	0.0	0.0	0.0	0.0	0.0	664.0
TFP	139.9	0.0	0.0	0.0	0.0	0.0	0.0	0.0	0.0	139.9
CON	0.0	624.3	664.0	139.9	0.0	0.0	0.0	0.0	0.0	1,428.3
INV	0.0	0.0	0.0	0.0	423.6	0.0	0.0	0.0	0.0	423.6
EXP	0.0	0.0	0.0	0.0	0.0	0.0	0.0	0.0	275.8	275.8
IMP	0.0	0.0	0.0	0.0	275.8	0.0	0.0	0.0	0.0	275.8
ROW	0.0	0.0	0.0	0.0	0.0	0.0	0.0	275.8	0.0	275.8
TOTAL	1,428.3	624.3	664.0	139.9	1,428.3	423.6	275.8	275.8	275.8	5,535.9

자료: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 노동관련 데이터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노동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로 분류하였음.
- 「가계동향조사 2013년」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비숙련노동자로,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를 숙련노동자로 가정하였음.
 - * [표 4-2]에서 보듯이 비숙련노동자의 비중은 62.7%에 달하며, 숙련노동자의 비중은 37.3%에 달함.
 - * 총근로소득 중에서 비숙련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 숙련노동자

38) 지적자본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초기의 지적자본은 국민계정에 나타난 지식재산투자와 같다고 가정하였음.

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2%에 달함.

- * 따라서 일인당 생산성(근로소득 비중/노동자 수 비중)은 비숙련노동자 0.75이고 숙련노동자의 1.43에 달함.
- * 이는 한 단위 노동을 투입했을 때 숙련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에 비해 약 2배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이와 같이 추정된 자료를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모형에 입력되는 노동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 * 우선 숙련 및 비숙련 비중을 장래인구추계의 생산가능인구에 곱하여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수를 도출하였음.
- *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총 노동공급시간에 생산성과 단위당 노동임금을 곱하여 유효노동공급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음.

[표 4-2]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소득 비중 및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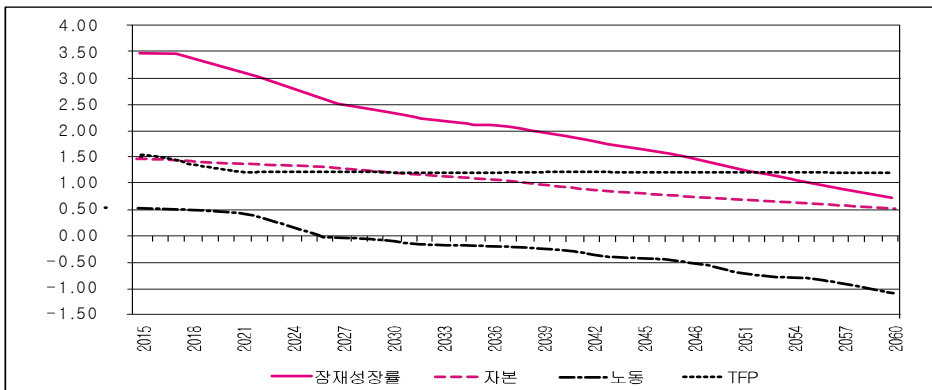
	노동자수 비중(%)	근로소득 비중(%)	생산성
비숙련	62.7	46.8	0.75
숙련	37.3	53.2	1.43

▶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잠재성장률 장기전망을 이용하여 생산, 노동, 자본의 성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시나리오로 가정하였음.
- [그림 4-1]에 나타난 국회예산정책처의 5년 기간별 장기추계를 이용하여 연도별 잠재성장률과 투입요소별 기여도를 재추정하여 분석을 위한 기준시나리오로 설정하였음.

[그림 4-1]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단위: %)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5년 기간별 장기추계를 저자가 연도별로 전환한 수치임.

2. 이민 규모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1) 분석 시나리오

▶ 시나리오 1(SCN1)

- 이민 유입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2%
 - 시나리오 1의 이민자 수는 2015년에 730천 명, 2030년에 658천 명, 2060년에 437천 명에 달하며, 이중 37.3%는 숙련노동자이고 62.7%는 비숙련 노동자임.

▶ 시나리오 2(SCN2)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5%로 설정
 - 시나리오 2의 이민자 수는 2015년에 1,847천 명, 2030년에 1,644천 명, 2060년에 1,093천 명에 달함.

▶ 시나리오 3(SCN3)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0%
 - 시나리오 3의 이민자 수는 2015년에 3,695천 명, 2030년에 3,289천 명, 2060년에 2,186천 명 증가한다고 가정함.

[표 4-3] 이민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

(단위: 천 명)

	시나리오 1 (SCN1)			시나리오 2 (SCN2)			시나리오 3 (SCN3)		
	생산가능인구 대비 2%			생산가능인구 대비 5%			생산가능인구 대비 10%		
	숙련	비숙련	합계	숙련	비숙련	합계	숙련	비숙련	합계
2015	275.5	463.6	739.1	688.8	1,158.9	1,847.7	1,377.6	2,317.8	3,695.3
2020	272.6	458.7	731.3	681.5	1,146.6	1,828.2	1,363.0	2,293.3	3,656.3
2025	260.2	437.8	698.0	650.5	1,094.6	1,745.1	1,301.1	2,189.1	3,490.2
2030	245.2	412.6	657.9	613.1	1,031.6	1,644.7	1,226.2	2,063.1	3,289.3
2035	230.3	387.5	617.8	575.8	968.7	1,544.5	1,151.5	1,937.5	3,089.0
2040	215.3	362.2	577.5	538.2	905.5	1,443.6	1,076.3	1,810.9	2,887.3
2045	202.6	340.9	543.4	506.5	852.1	1,358.6	1,012.9	1,704.2	2,717.1
2050	189.0	318.0	506.9	472.5	794.9	1,267.4	944.9	1,589.8	2,534.7
2055	177.6	298.8	476.3	443.9	746.9	1,190.9	887.9	1,493.9	2,381.7
2060	163.0	274.3	437.3	407.6	685.7	1,093.3	815.1	1,371.4	2,186.5

▶ 송금률에 대한 가정

- 이미자의 해외송금은 강동관 외 8명(2010)에 따라 노동소득의 8.1%로 가정
 - 강동관 외 8명(2010)은 GTAP 인력 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별 송금액을 추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타지역으로 송금된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재추정하면 노동소득의 송금비중은 8.1%에 달함.³⁹⁾

(2) 분석결과

1)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 시나리오 1

- 매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2%씩 증가한다면, 총공급은 이민자 수 기준균형 대비 1.1%(16.8조 원)~2.1%(76.6조 원)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최고 0.07%p 증가할 전망
 -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대비 노동비율이 감소하여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됨.
 -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표 4-3]에서 보듯이 기준균형 대비 총공급의 증가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음.
 - * 이민자의 수가 2015년에 276천 명으로 2060년도 163천 명보다 113천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균형 대비 총공급 증가율은 1.1%(16.8조 원)로 2060년 2.05%(76.6조 원)보다 1%p(59.8조 원)나 적은 것으로 추정됨.
 - * 이를 한계생산성으로 전환하면 2015년 0.0227조 원/천 명에 달하며, 2060년은 0.175조 원/천 명에 달해 2060년의 한계생산성이 2015년의 한계생산성에 비해 6.3배나 큰 것으로 추정됨.
 - [표 4-4]에서 보듯이 잠재성장률은 2015년에 3.53%로 추정되고 2060년에 0.73%로 추정되어 기준균형에 비해 각각 0.07%p, 0.0%p 높을 전망
 - *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성장률의 증가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이 전년대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민자가 체증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성장률의 증가폭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39) 강동관(2013)은 외국인근로자의 송금비중을 57.4%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민자가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내역을 분석한 것이라 이는 실제 이민자의 송금비중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2

-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5% 증가한다면 총공급은 기준균형 대비 2.74%(41.9조 원)~5.13%(191.8조 원)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최고 0.17%p 증가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가 5%씩 증가한다면 이민자는 2015년에 1,848천 명, 2060년 1,093천 명에 달해, 한계노동생산성은 2015년 0.0227조 원/천 명, 2060년은 0.175조 원/천 명으로 추정됨.
- 잠재성장률은 2015년에 기준균형에 비해 0.17%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2020년에 0.13%p, 2050년에 0.01%p 증가에 그칠 전망

▶ 시나리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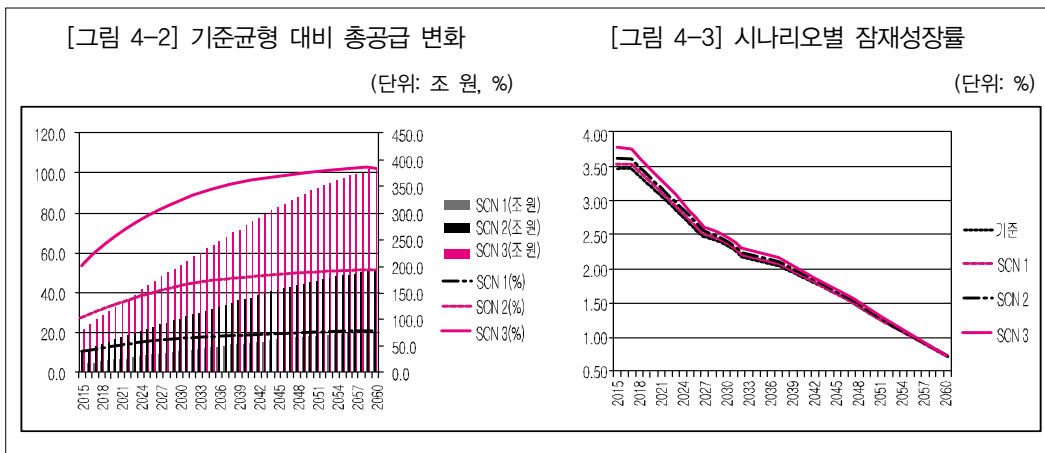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 수가 10% 증가한다면 총공급은 기준균형 대비 5.43%(83.0조 원)~10.27%(384조 원)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은 기준균형에 비해 0.33%p~0.01%p 증가할 전망
- 이민자가 생산가능인구 대비 10%씩 증가한다면 이민자 수는 2015년에 3,695천 명, 2060년에 2,187천 명에 달하고, 한계노동생산성은 2015년에 0.0225조 원/천 명, 2060년에 0.175조 원/천 명에 달할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15년에 기준균형에 비해 0.33%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2020년에 0.25%p, 2050년에 0.03%p 증가할 전망

[표 4-4] 시나리오별 총공급 변화

	기준균형 (조 원)	기준균형 대비 변화(%)			기준균형 대비 변화(조 원)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2015	1,528.8	1.10	2.74	5.43	16.8	41.9	83.0
2020	1,801.5	1.38	3.45	6.86	24.9	62.2	123.6
2025	2,076.2	1.59	3.96	7.90	33.0	82.2	164.0
2030	2,342.7	1.74	4.33	8.65	40.8	101.4	202.6
2035	2,610.6	1.84	4.60	9.19	48.0	120.1	239.9
2040	2,884.8	1.92	4.79	9.58	55.4	138.2	276.4
2045	3,148.3	1.97	4.93	9.86	62.0	155.2	310.4
2050	3,386.5	2.01	5.03	10.06	68.1	170.3	340.7
2055	3,584.2	2.04	5.09	10.19	73.1	182.4	365.2
2060	3,739.0	2.05	5.13	10.27	76.6	191.8	384.0

[표 4-5] 기준시나리오 대비 잠재성장률 변화

	기준균형 (%)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기준대비 잠재성장률 변화(%p)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2015	3.46	3.53	3.63	3.79	0.07	0.17	0.33
2020	3.16	3.21	3.29	3.41	0.05	0.13	0.25
2025	2.68	2.71	2.76	2.85	0.03	0.08	0.17
2030	2.35	2.38	2.42	2.48	0.03	0.07	0.13
2035	2.12	2.14	2.17	2.21	0.02	0.05	0.09
2040	1.92	1.94	1.96	1.99	0.02	0.04	0.07
2045	1.65	1.66	1.68	1.70	0.01	0.03	0.05
2050	1.34	1.34	1.35	1.37	0.00	0.01	0.03
2055	1.03	1.03	1.04	1.05	0.00	0.01	0.02
2060	0.73	0.73	0.73	0.74	0.00	0.00	0.01



2) 거시경제변수 변화

▶ 거시경제변수 변화

- [그림 4-2]에서 보듯이 총공급은 시나리오 1에서 1조 원 내외에 달하며, 시나리오 2에서 2.2조 원~2.6조 원, 시나리오 3에서 4.5조 원~5.3조 원을 기록할 전망
- GDP는 기준균형 대비 시나리오 1에서 1.0%~2.0%, 시나리오 2에서 2.4%~5.0%, 시나리오 3에서 4.8%~10.0%에 달할 전망
 - 총공급은 국내자본이 해외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축과 소비의 여력을 약화시켜 GDP

증가폭은 총공급의 증가폭보다 낮게 추정되고 있음.⁴⁰⁾

- 소비는 기준균형 대비 시나리오 1에서 0.7%~2.0%, 시나리오 2에서 1.7%~5.0%, 시나리오 3에서 3.3%~10.1% 증가할 전망
- 투자증가는 기준균형 대비 시나리오 1에서 1.8%~2.1%, 시나리오 2에서 4.5%~5.2%, 시나리오 3에서 8.9%~1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표 4-6] 시나리오별 거시지표 변화

	송금(10억 원)			GDP(%)			소비(%)			투자(%)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SCN1	SCN2	SCN3
2015	1,022.4	2,556.0	5,111.9	1.0	2.4	4.8	0.7	1.7	3.3	1.8	4.5	8.9
2020	1,048.3	2,620.9	5,241.7	1.3	3.2	6.3	1.1	2.7	5.3	2.0	4.9	9.7
2025	1,062.4	2,655.9	5,311.8	1.5	3.7	7.4	1.4	3.4	6.7	2.0	5.1	10.2
2030	1,060.3	2,650.7	5,301.4	1.6	4.1	8.2	1.6	3.9	7.8	2.1	5.2	10.4
2035	1,051.8	2,629.4	5,258.8	1.8	4.4	8.8	1.7	4.3	8.5	2.1	5.3	10.6
2040	1,040.1	2,600.2	5,200.4	1.9	4.6	9.2	1.8	4.5	9.1	2.1	5.4	10.7
2045	1,021.6	2,553.9	5,107.8	1.9	4.8	9.5	1.9	4.7	9.4	2.2	5.4	10.8
2050	994.0	2,485.1	4,970.2	2.0	4.9	9.8	1.9	4.9	9.7	2.2	5.4	10.8
2055	956.9	2,392.3	4,784.5	2.0	5.0	9.9	2.0	5.0	9.9	2.1	5.3	10.7
2060	912.0	2,280.0	4,560.0	2.0	5.0	10.0	2.0	5.0	10.1	2.1	5.2	10.5

3. 잠재성장을 1%p 제고를 위한 이민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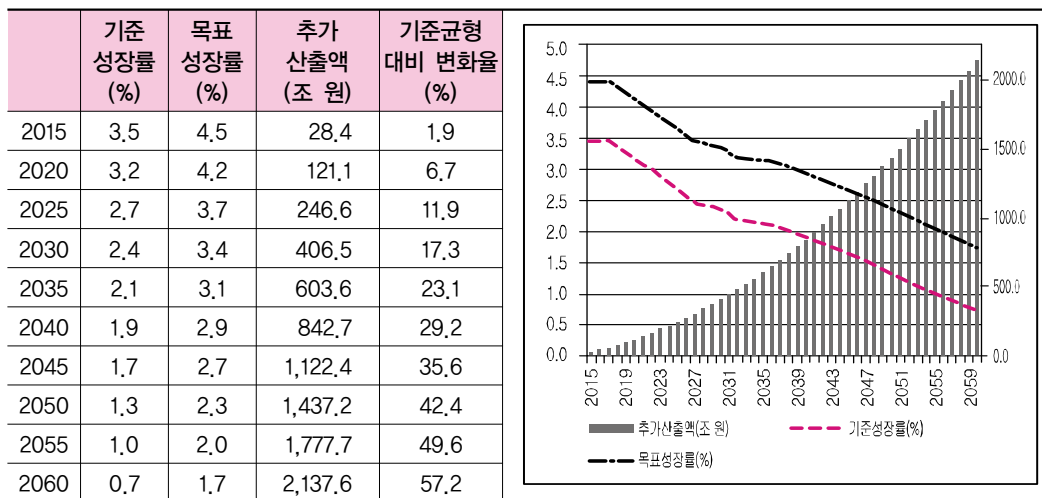
(1) 분석 시나리오

▶ 기준균형 대비 잠재성장을 1%p 향상

- 잠재성장의 목표를 기준균형에 비해 1%p 높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를 추정하고자 함.
 - [표 4-7]에서 보듯이 잠재성장을 1%p 향상시킨다는 것은 총공급이 2015년에 28.4조 원 증가를 의미하며, 2030년에 406.5조 원, 2060년에 2,137.6조 원 증가를 의미함.
 - 이는 기준균형 총공급대비 2015년에 1.9%, 2030년에 17.3%, 2060년에 57.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목표한 총공급량을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내생적으로 결정됨.

40) 본 연구에서 무역수지는 균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GDP는 소비와 투자의 합으로 추정됨. 송금이 증가하면 국내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총공급에 비해 GDP 증가율이 낮게 추정됨.

[표 4-7] 기준성장률과 목표성장률



(2) 분석결과

1) 필요 이민자 수 추정

▶ 잠재성장률 1%p 상승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60년 17,224천 명에 달함

-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15년에 1,660천 명, 2020년에 4,994천 명, 2030년에 9,267천 명, 2040년에 12,237천 명, 2050년에 14,791천 명, 2060년에 17,224천 명으로 필요한 이민자 수가 체증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38,613천명에 달해 기준균형에 비해 4.5% 증가하고, 2020년에 13.7% 증가하고, 2050년에 58.4%, 2060년에는 76.8% 증가할 전망이다.

[표 4-8]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해 필요 이민자 수

(단위: 천 명)

	기준시나리오			필요 이민자 수			이민유입 후 생산가능인구	
	숙련	비숙련	생산 가능인구	숙련	비숙련	생산 가능인구	총생산 가능인구	변화(%)
2015	13,775.7	23,177.7	36,953.3	570.4	1,090.2	1,660.5	38,613.9	4.5
2016	13,807.5	23,231.3	37,038.8	831.4	1,589.1	2,420.5	39,459.3	6.5
2017	13,799.6	23,218.0	37,017.6	1,075.4	2,055.5	3,131.0	40,148.5	8.5
2018	13,767.2	23,163.5	36,930.8	1,303.8	2,492.0	3,795.8	40,726.6	10.3

	기준시나리오			필요 이민자 수			이민유입 후 생산가능인구	
	숙련	비숙련	생산 가능인구	숙련	비숙련	생산 가능인구	총생산 가능인구	변화(%)
2019	13,716.0	23,077.3	36,793.3	1,517.5	2,900.6	4,418.0	41,211.3	12.0
2020	13,630.1	22,932.8	36,563.0	1,715.3	3,278.7	4,994.0	41,557.0	13.7
2021	13,525.4	22,756.7	36,282.1	1,899.5	3,630.7	5,530.2	41,812.3	15.2
2022	13,415.2	22,571.3	35,986.5	2,073.4	3,963.0	6,036.4	42,022.9	16.8
2023	13,302.2	22,381.2	35,683.4	2,238.7	4,279.1	6,517.8	42,201.2	18.3
2024	13,164.0	22,148.7	35,312.7	2,392.7	4,573.4	6,966.1	42,278.8	19.7
2025	13,010.9	21,891.0	34,901.8	2,537.4	4,850.0	7,387.4	42,289.2	21.2
2026	12,863.4	21,642.9	34,506.3	2,677.5	5,117.9	7,795.4	42,301.7	22.6
2027	12,705.1	21,376.4	34,081.4	2,809.6	5,370.3	8,179.9	42,261.3	24.0
2028	12,552.9	21,120.3	33,673.2	2,937.5	5,614.8	8,552.2	42,225.5	25.4
2029	12,406.5	20,874.1	33,280.7	3,062.1	5,852.8	8,914.9	42,195.6	26.8
2030	12,262.1	20,631.2	32,893.3	3,183.2	6,084.3	9,267.5	42,160.7	28.2
2031	12,122.0	20,395.3	32,517.3	3,302.3	6,311.9	9,614.2	42,131.5	29.6
2032	11,984.0	20,163.2	32,147.1	3,418.7	6,534.5	9,953.2	42,100.3	31.0
2033	11,836.9	19,915.8	31,752.7	3,529.2	6,745.7	10,274.9	42,027.6	32.4
2034	11,679.0	19,650.0	31,329.0	3,633.0	6,944.1	10,577.1	41,906.1	33.8
2035	11,515.4	19,374.9	30,890.3	3,731.6	7,132.6	10,864.1	41,754.4	35.2
2036	11,351.5	19,099.0	30,450.4	3,826.6	7,314.2	11,140.7	41,591.2	36.6
2037	11,190.3	18,827.8	30,018.1	3,919.5	7,491.7	11,411.1	41,429.2	38.0
2038	11,035.4	18,567.1	29,602.5	4,011.8	7,668.1	11,679.8	41,282.3	39.5
2039	10,892.5	18,326.7	29,219.2	4,106.0	7,848.3	11,954.3	41,173.5	40.9
2040	10,763.2	18,109.3	28,872.5	4,203.4	8,034.4	12,237.8	41,110.3	42.4
2041	10,642.2	17,905.6	28,547.9	4,302.4	8,223.6	12,525.9	41,073.8	43.9
2042	10,525.2	17,708.8	28,234.1	4,401.5	8,413.1	12,814.7	41,048.7	45.4
2043	10,406.8	17,509.5	27,916.3	4,498.8	8,599.0	13,097.7	41,014.0	46.9
2044	10,275.7	17,289.0	27,564.7	4,589.1	8,771.6	13,360.7	40,925.4	48.5
2045	10,129.1	17,042.3	27,171.4	4,670.7	8,927.6	13,598.3	40,769.7	50.0
2046	9,974.3	16,781.9	26,756.1	4,746.5	9,072.5	13,818.9	40,575.1	51.6
2047	9,823.4	16,528.0	26,351.5	4,822.1	9,217.1	14,039.2	40,390.7	53.3
2048	9,685.5	16,296.0	25,981.5	4,902.5	9,370.7	14,273.2	40,254.7	54.9
2049	9,561.9	16,088.1	25,650.0	4,989.0	9,536.1	14,525.1	40,175.1	56.6
2050	9,449.0	15,898.0	25,347.0	5,080.6	9,711.1	14,791.7	40,138.7	58.4
2051	9,340.6	15,715.7	25,056.4	5,174.6	9,890.9	15,065.5	40,121.9	60.1
2052	9,232.0	15,532.9	24,764.9	5,268.6	10,070.4	15,339.0	40,103.9	61.9
2053	9,121.1	15,346.4	24,467.5	5,361.3	10,247.7	15,609.0	40,076.4	63.8

	기준시나리오			필요 이민자 수			이민유입 후 생산가능인구	
	숙련	비숙련	생산 가능인구	숙련	비숙련	생산 가능인구	총생산 가능인구	변화(%)
2054	9,004.6	15,150.4	24,155.0	5451.1	10,419.2	15,870.3	40,025.2	65.7
2055	8,878.7	14,938.6	23,817.3	5,535.6	10,580.8	16,116.4	39,933.7	67.7
2056	8,741.5	14,707.7	23,449.1	5,613.7	10,730.1	16,343.8	39,792.9	69.7
2057	8,595.3	14,461.7	23,056.9	5,687.0	10,870.1	16,557.1	39,614.1	71.8
2058	8,445.6	14,209.8	22,655.3	5,759.4	11,008.6	16,767.9	39,423.3	74.0
2059	8,296.9	13,959.6	22,256.4	5,834.9	11,152.9	16,987.8	39,244.2	76.3
2060	8,151.0	13,714.2	21,865.2	5,916.2	11,308.2	17,224.4	39,089.6	78.8

2) 거시경제변수 변화

▶ 송금액

- 송금액은 2015년에 2.3조 원이던 것이 이민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 7조 원, 2030년에 14.6조 원, 2050년에 28.4조 원, 2060년에 35.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GDP 변화

- 송금이 없는 경우 GDP 변화는 [표 4-9]에 나타난 총공급의 변화와 동일하지만, 송금이 있는 경우 자본유출로 인해 GDP 증가분이 총공급의 증가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표 4-9]에서 보듯이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GDP는 기준균형 대비 2015년에 1.6% 증가하여 송금이 없는 경우에 비해 0.3%p 낮아질 전망이다
- 송금액이 증가할수록 이 차이는 커져 2060년에는 송금으로 인한 GDP 손실은 1.9%p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소비 및 투자변화

- 소비는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기준균형 대비 2.4%~54.3% 증가하고, 송금이 없는 경우 2.8%~55.6% 증가하여 송금에 따른 차이가 0.4%p~1.3%p에 달함.

- 투자는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 기준균형 대비 0.6%~43.7% 증가하고, 송금이 없는 경우 0.3%~64.9%로 추정되어 투자가 송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 송금으로 인해 투자의 증가폭이 0.3%p~21.2%p 낮아질 전망이다.

[표 4-9] 잠재성장률 1%p 제고에 따른 거시지표 변화

	송금액 (10억 원)	GDP(%)		소비(%)		투자(%)	
		송금	비송금	송금	비송금	송금	비송금
2015	2,251.3	1.6	1.9	2.4	2.8	0.6	0.3
2020	7,016.8	5.9	6.7	5.3	6.0	1.0	8.8
2025	11,018.9	10.8	11.9	9.6	10.4	2.5	16.2
2030	14,638.6	16.1	17.3	14.7	15.6	5.4	23.1
2035	18,126.3	21.7	23.1	20.2	21.1	9.4	30.0
2040	21,602.5	27.7	29.2	26.1	27.1	14.7	37.1
2045	25,052.9	34.1	35.6	32.5	33.5	20.6	44.4
2050	28,426.3	40.8	42.4	39.2	40.3	27.6	51.9
2055	31,729.8	47.8	49.6	46.4	47.6	35.0	59.1
2060	35,205.4	55.3	57.2	54.3	55.6	43.7	64.9

3) 가격변수 변화

▶ 소비자가격 변화

- 소비자가격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감소폭이 23.8%에 달할 전망
 - 소비자가격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총공급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작아 물가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총공급의 증가폭이 매우 클 경우 소비자물가는 상승할 전망
- 송금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 송금이 증가할수록 수요여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기준균형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실질임금 변화

- 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60년에 최고 11.6%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최고 36%까지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비숙련이민자의 공급

증가효과와 낮은 생산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환율 및 교역조건 변화

- 환율은 소비자가격과 같이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23.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 본 연구는 소국개방경제와 균형수지를 가정하고 있어 수입가격이 수출가격과 동일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국내가격변화가 환율변화를 크게 좌우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교역조건은 수입물가 대비 국내물가로 추정되는데, 국내물가가 하락할수록 교역조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 송금은 전반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송금이 국내물가를 더욱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표 4-10] 잠재성장률 1%p 제고에 따른 가격 변화

(단위: %)

	소비자가격		실질임금				교역조건		환율	
	송금	무송금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		송금	무송금	송금	무송금
			송금	무송금	송금	무송금				
2015	4.6	4.3	0.0	-0.1	-5.3	-5.4	-0.4	-0.3	5.0	4.6
2020	1.8	1.4	0.8	0.7	-13.4	-13.6	-0.2	0.2	2.0	1.2
2025	-1.8	-2.3	2.2	2.1	-18.0	-18.2	-0.2	0.4	-1.6	-2.7
2030	-5.4	-5.9	3.9	3.8	-21.2	-21.5	-0.2	0.5	-5.3	-6.4
2035	-9.0	-9.5	5.6	5.5	-23.9	-24.1	-0.2	0.5	-8.8	-10.0
2040	-12.3	-12.8	7.3	7.2	-26.3	-26.5	-0.2	0.5	-12.1	-13.2
2045	-15.4	-15.8	8.9	8.8	-28.5	-28.7	-0.2	0.5	-15.2	-16.3
2050	-18.3	-18.7	10.3	10.1	-30.7	-31.0	-0.3	0.5	-18.1	-19.1
2055	-21.1	-21.5	11.3	11.1	-33.1	-33.4	-0.3	0.5	-20.8	-21.8
2060	-23.8	-24.2	11.6	11.4	-36.0	-36.3	-0.4	0.3	-23.5	-24.4

4. 이민 규모의 단계적 목표치 설정

(1) 분석 시나리오

▶ 이민 규모에 대한 단계적 목표치를 분석 시나리오로 설정

- [표 4-11]에서 보듯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전까지는 이민 목표를 2015년에 5만 명,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15만 명을 목표로 설정

[표 4-11] 목표 생산가능인구 수 달성을 위한 필요 이민자 수

(단위: 천 명)

	인구	기준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목표	필요 이민자 수	이민비중(%)
2013	50,220	36,712	36,712	14	0.0
2014	50,424	36,839	36,869	30	0.1
2015	50,617	36,953	37,003	50	0.1
2016	50,801	37,039	37,139	100	0.3
2017	50,977	37,018	37,168	150	0.4
2018	51,141	36,931	37,168	237	0.6
2019	51,294	36,793	37,168	374	1.0
2020	51,435	36,563	37,168	605	1.7
2021	51,566	36,282	37,168	885	2.4
2022	51,686	35,987	37,168	1,181	3.3
2023	51,791	35,683	37,168	1,484	4.2
2024	51,888	35,313	37,168	1,855	5.3
2025	51,972	34,902	37,168	2,266	6.5
2026	52,042	34,506	37,168	2,661	7.7
2027	52,094	34,081	37,168	3,086	9.1
2028	52,131	33,673	37,168	3,494	10.4
2029	52,154	33,281	37,168	3,887	11.7
2030	52,160	32,893	37,168	4,274	13.0
2031	52,146	32,517	37,168	4,650	14.3
2032	52,115	32,147	37,168	5,020	15.6
2033	52,060	31,753	37,168	5,415	17.1
2034	51,985	31,329	37,168	5,839	18.6
2035	51,888	30,890	37,168	6,277	20.3
2036	51,771	30,450	37,168	6,717	22.1
2037	51,632	30,018	37,168	7,149	23.8
2038	51,470	29,602	37,168	7,565	25.6
2039	51,291	29,219	37,168	7,948	27.2
2040	51,091	28,873	37,168	8,295	28.7
2041	50,873	28,548	37,168	8,620	30.2
2042	50,636	28,234	37,168	8,933	31.6
2043	50,380	27,916	37,168	9,251	33.1
2044	50,102	27,565	37,168	9,603	34.8
2045	49,810	27,171	37,168	9,996	36.8
2046	49,502	26,756	37,168	10,411	38.9
2047	49,181	26,351	37,168	10,816	41.0
2048	48,841	25,981	37,168	11,186	43.1
2049	48,488	25,650	37,168	11,518	44.9
2050	48,121	25,347	37,168	11,821	46.6
2051	47,741	25,056	37,168	12,111	48.3
2052	47,353	24,765	37,168	12,403	50.1
2053	46,952	24,467	37,168	12,700	51.9
2054	46,541	24,155	37,168	13,013	53.9
2055	46,125	23,817	37,168	13,350	56.1
2056	45,703	23,449	37,168	13,718	58.5
2057	45,275	23,057	37,168	14,111	61.2
2058	44,842	22,655	37,168	14,512	64.1
2059	44,403	22,256	37,168	14,911	67.0
2060	43,959	21,865	37,168	15,302	70.0

- 2013년 현재 이민자 수가 14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목표는 합리적인 목표로 간주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다 야심적인 이민 유입을 고려하였음.
- [표 4-11]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는 이민자를 포함한 생산가능인구 수가 2017년 수준인 37,168천 명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이민자를 추정하였음.
 - * 생산가능인구가 37,168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0년에 필요한 이민자는 374천 명에 달하며, 2030년에 4,274천 명, 2040년에 8,295천 명, 2050년에 11,821천 명, 2060년에 15,302천 명에 달함.
 - * 이는 기준균형하의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2020년에 1.7%, 2030년에 13%, 2050년에 46.6%, 2060년에 70%나 증가하는 수치임.
 - * 연평균 증가 이민 수로 보면 2017~2030년 동안은 연평균 298천 명, 2013~2040년간 연평균 402천 명, 2041~2050년간 연평균 353천 명, 2051~2060년간 연평균 348천 명의 이민자 증가가 필요

(2) 분석결과

1)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 총공급은 기준대비 최고 47.1%, 잠재성장률은 최고 1.3%p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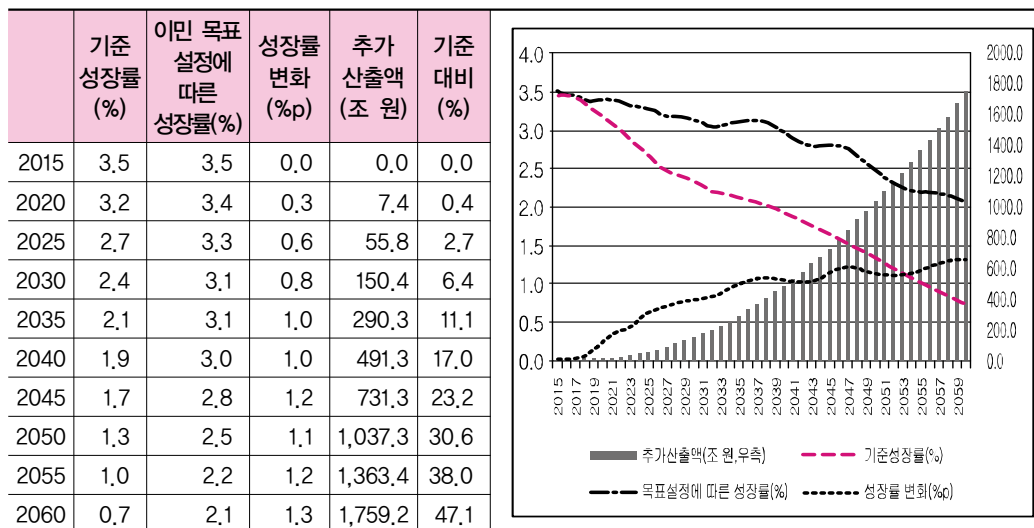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기준균형 대비 잠재성장률은 2020년에 0.3%p, 2040년에 1%p, 2060년에 1.3%p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른 추가 산출액은 2020년에 7.4조 원, 2040년에 491.3조 원, 2060년에 1,759.2조 원 증가하여 기준균형 대비 각각 0.4%, 17%, 47.1% 증가할 전망

2) 거시경제변수 변화

▶ 송금액

- 송금액은 이민자 수 증가와 더불어 2020년에 8,667억 원에서 2060년에 31조 9,1337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표 4-12] 이민 목표 설정에 따른 총공급 및 잠재성장률 변화



[표 4-13] 이민목표 설정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송금 (10억 원)	GDP (%)	소비 (%)	투자 (%)	소비자가격 (%)
2015	69.2	0.0	0.6	-1.4	7.0
2020	866.7	0.3	1.0	-1.3	6.6
2025	3,448.3	2.4	2.5	2.6	5.2
2030	6,888.9	5.8	5.4	8.4	2.7
2035	10,686.4	10.3	9.4	15.0	-0.5
2040	14,940.6	16.0	14.7	23.3	-4.2
2045	18,791.1	22.0	20.6	30.6	-7.9
2050	23,178.5	29.3	27.6	40.1	-11.7
2055	26,818.6	36.5	35.0	47.4	-15.3
2060	31,913.3	45.4	43.7	57.8	-18.9

▶ 국민계정변화

- GDP는 2020년에 기준균형 대비 0.3%, 2050년에 29%, 2060년에 45.4%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도 2060년에 43.7%까지 증가할 전망
- 투자는 2015년에 1.4% 감소하지만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60년에 57.8% 증가할 전망
- 투자가 초기에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통시간(intertemporal) 효용 극대화 행위의 결

과로 분석됨.

* 본 연구와 같이 완전 예측능력을 가진 가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대부분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반대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 저축을 통해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전 기간의 효용을 극대화함.

- 소비자가격은 203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감소폭이 18.9%에 달할 전망

3) 노인부양비 변화

▶ 이민 증가에 따른 노년부양비는 이민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상이하지만 2050년 이전까지는 노인부양비가 감소할 전망

- [표 4-14]은 노인부양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민자에 평균연령에 대한 단순가정에 기초하여 추정된 수치임.

-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평균연령뿐만 아니라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연령만을 가지고 노년부양비의 변화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민자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노년부양비를 추정함.

- [표 4-14]은 이민자의 평균연령에 따른 노년부양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표 4-14]에서 기준균형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한 노년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60년에 생산가능인 100명당 노인 80.6명을 부양할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2020년에 노인 21.8명, 2030년에 34.1명, 2040년에 44.4명을 부양하여 이민 확대는 노인부양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 이민자가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 이민 확대는 장기적으로 노인부양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25세인 경우는 2060년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는 51.6명으로 기준균형에 비해 29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⁴¹⁾
 - *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30세인 경우는 2060년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는 72.2명으로 여전히 기준균형에 비해 부양비가 감소할 전망

41)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25세라고 가정하면 2013년에 이민 온 사람은 2043년에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후 이민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게 됨.

*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35세라고 가정하면 2013년 이민자가 2043년에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여 2057년부터는 새로이 유입되는 이민자 수보다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이민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의 노인부양비는 119명으로 기준균형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⁴²⁾

[표 4-14] 이민 증가에 따른 노년부양비 변화(노인 수/생산가능인구 100명)

	기준균형	이민자 평균연령 25세	이민자 평균연령 30세	이민자 평균연령 35세
2020	22.1	21.8	21.8	21.8
2030	38.6	34.1	34.1	34.1
2040	57.2	44.4	44.4	44.4
2050	71.0	48.4	48.7	52.6
2060	80.6	51.6	72.2	119.0

5. 소결

▶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산가능인구 대비 2%~10%의 이민자가 유입된다면 총공급은 단기적으로 1.1%(16.8조 원)에서 장기적으로 10.3%(384조 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민 단위당 한계생산성은 단기적으로 0.0227조 원/천 명에서 장기적으로 0.175조 원/천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 이는 국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수록 이민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을 1%p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15년에 1,660천 명에 달하고, 2050년에 14,791천 명, 2060년에 17,224천 명에 달함.
 - 잠재성장률 1%p 증가는 총공급이 2015년에 1.9%(28.4조 원) 증가를 의미하며, 2060년에 57.2%(2,137조 원) 증가를 의미함.
 - 이민 증가에 따른 송금액은 2015년에 2.3조 원, 2060년에 35.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송금증가는 GDP, 소비, 투자의 증가 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 등 송금에 따른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42)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35세라고하면 2057년에 노인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14,978천 명에 달하고 새로이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14,110천 명에 달함.

- 이민의 단계적 목표치는 생산가능인구가 축소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2017년 이후는 2017년의 생산가능인구 수준이 유지되도록 도전적으로 설정할 경우 2060년까지 2%대의 성장률을 유지 가능
 - 이와 같이 이민목표치를 설정하면 잠재성장률은 기준균형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하여 2040년까지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이후 2060년까지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
 - 2017년 이후 연평균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증가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2%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⁴³⁾ 현재의 이민 규모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
- 이민 목표치를 가지고 노인부양비를 추정해보면 2050년대까지 부양비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48.4명~52.6명까지 하락시킬 수 있을 전망
 - 그러나 이민자의 평균연령이 높을 경우 이민자의 노인연령으로의 편입이 빨라져 2060년에 부양비가 오히려 119로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잠재성장률과 사회적 부양비 제고를 위해 이민자의 연령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이민자를 선별할 필요성이 높음.

43) 남성일·정용훈(2014)의 최근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연간 30만 명의 이민자를 가정하였을 때 2030년 성장률을 2.4%로 추정하였음. 본 연구의 이민목표치에서 2030년 성장률은 3.1%로 추정됨.

제5장 걸어 및 시사점: 이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단순인력제도의 개선

▶ 국내 단순인력의 정주화 확대

-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상 단순인력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이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규모의 증대로 인한 정주화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 맞물려 있어 인력부족과 그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탐색이 요구됨.
- 단순기능인력의 숙련 기능인력으로의 전환
 - 2013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은 40대가 4.7%, 30대가 37.7%, 20대가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13.1%, 전문대졸이 18.6%, 고졸이 47.7%, 중졸이 19.2%, 초졸 이하가 1.4%로 구성
 - 약 32%에 달하는 단순기능인력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므로 이들이 숙련화와 정주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기반을 둔 부족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일률적으로 비전문 단순직종으로만 분류하고 사증기간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숙련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국내의 외국인력 도입 체계는 숙련과 비숙련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숙련수준이 존재하고 있어 숙련수준에 맞는 다양한 인력 도입체계 구축이 요구됨.

▶ 재외동포에 대한 쿼터 지속

- 2009년부터 303,000명 총량제한제 도입 이후 2010년부터 쿼터가 배정되지 않고 있어 쿼터 배정이 지속되어야 함.
-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포를 우대할 필요

▶ 단기적인 인력부족상황만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실업률, 유휴인력),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고려 미흡

- 장기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외국인력 적정규모 추정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행정통계 미비

▶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도입

- 단순한 인력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임.

2. 단순기능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의 정책 중심 전환

▶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한 외국인력 활용

-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급인력 적극유치, 단순기능인력 유입억제라는 공통된 기조 하에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견지

- 선행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숙련자일수록 노동대체 탄력성이 낮고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낮다는 보여주고 있음. 아울러 이민자가 숙련자일수록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높으며, 이주자의 본국의 GDP, 즉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가재정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저숙련자와 동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아닌 숙련자와 가능한 고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미숙련자들에 의한 생산이 최종생산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

- 단순기능 외국인력들이 일하는 업종은 주로 3D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생산물이 최종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산물이라는 감안한다면 단순기능 외국인력들의 노동가치로 단순하게 경제효과를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임금감소나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내국인 근로자의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성 여부 및 기타 요인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

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더라도 그 대체 수준은 낮다고 주장

3. 국내 전문인력 제도의 개선

▶ 전문인력은 기술, 인재 중심의 소프트파워(soft power)⁴⁴⁾ 강화와 생산성을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

-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유입)은 인적자원⁴⁵⁾이 경쟁국가로 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저하(상승)와 저성장 경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유입)은 한 나라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점함.

▶ 체류 조건을 완화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 필요

- 전문 인력 정책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 중에서도 핵심인재에 대한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보다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

▶ 비자분류체계의 개선

- 우리나라 역시 체류자격 유형별로 자격 요건을 상술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기술인력으로 분류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를 재설정할 필요

- 국가마다 실행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따라 전문인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 각양각색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중 회화지도, 예술흥행, 단기취업자, E7 사증 취득자 중 주방장과 조리사,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를 전문인력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함.
-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의 확립아래 어떤 업종에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특정 직종에 따라 인력 수급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이며,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

▶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

44)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도록 하는 힘'으로 주로 군사, 경제력 등의 유형(tangible)의 자원을 '하드 파워'라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를 소프트 파워라고 하며, 보편적인 문화, 이데올로기, 국제체제 창설 능력, 정보 등의 무형 자원이 그 예이다.(참조: Joseph samuel Nye, Jr., "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 New Yory:Basic Book, 1990)

45) 한 사회, 또는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생산적인 재능·기술·지식을 갖춘 노동자의 수에 의해 그 양(量)이 결정된다.

- 단순기능인력은 도입쿼터 결정시에서부터 입국 이후의 취업교육, 취업관리 등에 있어서 비교적 체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우수인재의 경우 관계기관별 자체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책대상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지원 프로그램 제고

- 외국에서 선별하여 유치하는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동포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대기업의 인력수요 특성을 구분해서 파악

4. 국내연구의 활성화

▶ 노동시장의 수요 파악이 전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국 근로자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줄이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수요파악은 전제조건임.

▶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 전망과 모형개발

-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이 필수

-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수요 전망 필요

- 다양한 국내환경을 고려할 필요

- 전망에는 국내의 잠재노동력과 다양한 이민인력에 대한 고려 필요
- 국내 인구정책과도 연계

▶ 모형개발과 분석을 위한 기존의 기초자료의 통합

- 통계생산처에 따라 통계를 분류하고 있어 통계의 연계성 부족

- 따라서 통계집적에 있어 산업별, 학력별, 직업별 등 외국인 고용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확립할 필요

- 자료 생성 통합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 뒷받침 필요

5. 전담조직 신설

- ▶ 외국인력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외국인력의 규모가 전체인구의 3.1% 이상이며, 그 대상도 다양화 되고 있어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전담기구가 필요
- ▶ 이민정책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 시행과 갈등 소지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control tower가 필요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동관 외(2010), 이민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법무부
- 강동관 외(2014), 2014 한국의 이주동향,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남성일·정용훈(2014),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민정책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2권 3호, pp.5-48, 2014. 9.
- 정기선 외(2013), 체류외국인실태조사, 법무부
- 중소기업 중앙회(2013), 2013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 법무부(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Access Economics (2008), “Migrant Fiscal Impact Model: 2008 update”
http://www.immi.gov.au/media/publications/research/_pdf/migrants-fiscal-impact-april-2008.pdf
- Aydemir, A., and Borjas G.J.(2007), “Ross-country Variation i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5: 663-708.
- Butcher Kristin F. and Card Davis(1991), “Immigration and Wages: Evidence from the 1980’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Hundred and Thir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ay, 1991), pp. 292-296.
- Bodvarsson and Van den berg(2009),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Theory and Policy”, Springer 1st ed.
- Borjas, G. J.(1986), “The Sensitivity of Labor Demand Functions to Choice of Dependent Variabl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1986, 58-66.
- _____ (1995), “The Economics of Benefits from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2), pp. 3~22.
- _____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335-1374
- Bratsberg, B., and O. Raaum., (2010), “Immigration and Wages: Evidence from Construction”, CReAM DP No 06/10, University College London.31
- Card, D., (2001), “Immigration Flows, Native Outflows, and the Local Markets Impacts of Higher Immigr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1): 22-64.
- DIAC(2009), “Economic Impacts of Immigration”,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New Zealand

- Dumont, Jean-Christophe, Spielvogel, Gilles, Widmaier, Sarah (2010), "International Migrants in Developed,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xtended Profil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14, www.oecd.org/els/workingpapers
- Freeman, R.(2006), "People flows in glob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 145-170
- Grossman, J. B.(1982), "The Substitutability of Natives and Immigrants in Production,"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596-603
- Hamermesh, D(1993), *Labor Dema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3), "World Migration Report 2013"
- Joseph samuel Nye, Jr. ,(1990), "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 New York: Basic Book.
- OECD(2006), *Migration in OECD countries: Labour market impact and integration issue*.
- _____(201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 LaLonde, R., & Topel, R. (1991a), "Labor market adjustments to increased immigration", In J Abowed Freeman(eds) *Immigration, Trade, and the Labor Marke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91b), "Immigrants in the American labor market: quality, assimilation, and distributional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81: 297-302.
- Longhi, S., Nijkamp, P. and Poot, J., (2006), "The fallacy of "Job Robbing",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2006-050/3
- Manacorda, M., A. Manning, and J.Wadsworth., (2010),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Structure of Wages: Theory and Evidence from Britain", Discussion Paper No 7888,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32
- Nana, Ganesh , Kel Sanderson, and Rob Hodgson (2006), "Economic Impacts of Immigration" IMSED Research.
- Walmsley, T. L., S. A. Ahmed and C. R. Parsons., (2009), "The Impact of Liberalizing Labor Mobility in the Pacific Region", GTAP Working Paper No. 31.
- Walmsley, T. L. and L. A. Winters, (2005),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the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 Simulation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0, No. 4.
- Walmsley, T. L., L. A. Winters and S. A. Ahmed (2007), "Measuring the Impact of the Movement of labor Using a Model of Bilateral Migration Flows", GTAP Technical Paper, No. 27.
- United Nations, 2002,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Ageing 2002*. (<http://www.un.org/esa/population/index.html>)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 eps.go.kr](http://www.eps.go.kr)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계, 각 년도

_____, 「출입국월간통계」 2014.6월호

_____,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_____, 「출입국관리법」(제12조관련)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10.10.>

_____, 법무부고시 제11 - 384호)

_____(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산업통상자원부(2013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2012」

_____, 「외국인고용조사 2013」

_____, 장래인구추계2011: 2010년~2060년, 통계청, 201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중소기업 중앙회(2013), 「2013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부록 1〉

1. 외국인의 경제활동, 2012&2013

구분	연도	계 (천명)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15세이상 외국인	2012	111.4	23.9	28.7	4.8	8.3	16	7.3	12.9	9.6
	2013	112.6	22.6	23.4	4.8	8.2	20.4	8.8	12.9	11.4
경제활동 인구	2012	82.4	23.8	25.4	4.7	1.7	10.3	5	6.5	4.9
	2013	79.3	22.6	19.7	4.8	1.2	13.2	6.2	6.2	5.4
취업자	2012	79.1	23.8	24.1	4.7	1.3	9.9	4.7	6	4.5
	2013	76	22.6	18.6	4.8	1.1	12.4	5.8	5.8	5
실업자	2012	3.3	0	1.3	0	0.4	0.4	0.3	0.5	0.4
	2013	3.3	0	1.1	0	0.1	0.8	0.4	0.4	0.4
비경제 활동인구	2012	29	0	3.3	0	6.6	5.7	2.3	6.3	4.7
	2013	33.3	0	3.7	0	7	7.2	2.7	6.7	6
경제활동 참가율	2012	74	99.9	88.5	99.4	20.1	64.5	68.9	50.8	51.1
	2013	70.4	99.9	84.2	99.3	15	64.7	69.7	48.3	47.1
고용률	2012	71	99.8	84.1	99.4	15.6	61.9	64.7	46.9	46.8
	2013	67.5	99.7	79.3	98.9	13.2	60.8	66.1	44.9	43.8
실업률	2012	4	0	5.1	0	23.5	3.9	6	7.7	8.2
	2013	4.2	0	5.6	0	8.3	6.1	6.5	6.5	7.4

출처: 외국인고용조사, 안행부

2. 체류 외국인 현황(2007~2014.8)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총 계	476,179	548,553	551,858	557,941	595,098	529,690	549,202	612,397	
전문 인력	소계	33,502	38,261	41,143	44,320	47,774	50,264	50,166	50,401
	단기취업(c-4)		957	715	712	679	377	460	590
	교수(E-1)	1,279	1,589	2,056	2,266	2,474	2,631	2,637	2,774
	회화지도(E-2)	17,721	19,771	22,642	23,317	22,541	21,603	20,030	19,121
	연구(E-3)	2,318	2,057	2,066	2,324	2,606	2,820	2,997	3,109
	기술지도(E-4)	174	121	197	233	202	160	222	195
	전문직업(E-5)	414	530	536	594	629	694	667	653
	예술흥행(E-6)	4,421	4,831	4,035	4,162	4,246	4,528	4,940	5,184
	특정활동(E-7)	7,175	8,405	8,896	10,712	14,397	17,451	18,213	18,775
단순 기능 인력	소계	442,677	511,249	511,160	513,621	547,324	479,426	499,036	561,996
	비전문취업	175,001	190,777	188,363	220,319	234,295	230,237	246,695	264,570
	연수취업(E-8)	36,090	16,826	11,307					
	선원취업(E-10)	2,900	4,314	5,207	6,716	9,661	10,424	12,163	13,790
방문취업(H-2)	228,686	299,332	306,283	286,586	303,368	238,765	240,178	283,636	
결혼이민자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8,496	150,865	151,605	
유학생	56,006	71,531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89,143	
혼인귀화자(누적)	14,609	39,067	56,205	66,474	77,203	84,933	93,953	98,716	

3.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연도별 도입 규모: 2004~2013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41,000	18,000	72,800	109,600	132,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비전문취업제 (E-9)	25,000	14,300	34,7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57,000	62,000
방문취업제 (H-2)	16,000	3,700	38,050	60,000	60,000	17,000	-	-	-	-

주: 방문취업제 동포(H-2)는 2010년부터 사증발급총량제(303천명)로 관리하면서 체류기한 만기로 출국 및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감소 인원만큼만 신규 입국 허용

4.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 및 재외동포(방문취업자, H-2)의 임금

출처	연도	조사대상	대상업종	월평균급여	연간 총급여	표본
국세청	2008	과세확정 신고자	전산업	109.8	1,317.10	344,583명
	2009		전산업	111.4	1,336.70	365,753명
	2010		전산업	143.8	1,726.10	403,782명
	2011		전산업	151.6	1,818.70	465,033명
	2012		전산업	163.8	1,965.30	474,289명
외국인 고용조사	2012	외국인 전체	전산업	165.4	1,984.40	15세 이상 10,000명
	2013		전산업	170.1	2,041.00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	2010	외국인 근로자	전산업	139.3	1,671.60	13개국 762명
			제조업	158.9	1,906.8	585명
		중국동포	음식점업	143.2	1,718.4	154명
			기타	154.6	1,855.2	50명
			평균	155.2	1,862.40	789명
	2013	외국인 고용업체	제조업	183.1	2,197.20	270개 제조업체 1,724명
			농축산업	136.1	1,633.20	297개 농축산업체 966명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	159.5	1,913.00	959명
			농축산업	132.5	1,590.20	191명
			평균	155.0	1,859.60	14개국 1,150명
		중국동포	제조업	178.1	2,137.40	606명
			음식점업	156.7	1,880.50	137명
			기타	168.8	2,025.70	33명
			평균	173.9	2,087.20	776명
ILO	2012	외국인 근로자	전산업	160.5	1,926.00	13개국 333명

5.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송금/저축/생활비/거주비

출처	조사연도	송금자 비율	월평균 임금	평균 송금액	저축자 비율	저축금액 (만원)	생활비 (만원)	거주비 (만원)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2010	92.2	139.3	88.1	69.4	52.36	33.71	18.38
	2013	93.0	155.0	107.1	61.8	54.47	35.57	17.01

*저축은 송금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송금+저축+생활비+거주비>임금

6. 방문취업자(중국동포)의 임금/송금/저축/생활비/거주비

출처	조사연도	송금자 비율	월평균 임금	평균 송금액	저축자 비율	저축금액 (만원)	생활비 (만원)	거주비 (만원)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2010	67.7	155.2	65.97	73.3	66.13	36.47	24.16
	2013	56.4	173.9	74.42	73.3	74.06	52.08	30.95

7. 전문인력의 임금

* 법무부 2010년 상장기업체 조사결과(강동관 외, 2010)

- ▶ 내국 전문인력의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임금수준은 85.53%, 총고용비용 81.71%, 업무량 69.21%, 생산성 70.79% 근로시간은 66.71%로 조사됨.
- ▶ 코스피 기업체의 경우 임금수준 95.75%, 총고용비용 80.75%, 생산성 76.50%, 업무량 72.50%, 근로시간 70.50%로 나타남.
- ▶ 코스닥 기업체의 경우 총고용비용 82.78%, 임금수준 74.17%, 업무량 65.56%, 생산성 64.44%, 근로시간이 62.50%등으로 조사됨.

8. 사증별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12조관련)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10.10>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6.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7.삭제 <2011.11.1>	
8.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단기취업(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 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10.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1.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2.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13.일반연수(D-4)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15.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6.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7.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18.무역경영(D-9)	<p>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18의2.구직(D-10)	<p>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19.교수(E-1)	<p>「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p>
20.회화지도(E-2)	<p>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p>
21.연구(E-3)	<p>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22.기술지도(E-4)	<p>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p>
23.전문직업(E-5)	<p>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24.예술흥행(E-6)	<p>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p>
25.특정활동(E-7)	<p>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p>
25의2. 삭제 (2007.6.1)	
25의3.비전문취업(E-9)	<p>「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p>
25의4.선원취업(E-10)	<p>「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p>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6. 방문동거(F-1)	<p>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p> <p>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27. 거주(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자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p> <p>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p>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28.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8의3. 영주(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p>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p>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p> <p>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p>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p> <p>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28의4.결혼이민(F-6)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9.기타(G-1)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0.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1.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p>나. 활동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소금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네)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데)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12) 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 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헤)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소) 육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

〈부록 2〉 분석모형

▶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을 수정·보완⁴⁶⁾

▶ 가계의 효용 함수

-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agent)로 구성된 가계는 무한(infinite) 생존능력과 미래에 대한 완전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소유한 것으로 가정
- 대표소비자는 주어진 통시간(intertemporal) 가치분소득을 가지고 통시간 효용(U_w)을 극대화함
- 효용함수는 시간에 대해 분리 가능(separable)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가정함

$$\max_{C,L} U(Z_t) = \sum_{t=0}^{\infty} \beta^t \frac{Z_t^{1-\theta}}{1-\theta} \quad (1)$$

$$\text{where } Z_t = [\alpha C_t^\rho + (1-\alpha)(H_t - L_t)^\rho]^{\frac{1}{\rho}} \quad (2)$$

- 여기서 β 는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의미하며, $1/\theta$ 는 시점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나타내며, θ 는 위험회피도를 의미함
- L_t 는 t 기의 노동시간을 의미하면, H_t 는 총 부존(endowment) 시간을 의미하며, $H_t - L_t$ 는 여가시간을 의미함
- Z_t 는 소비(C_t)와 여가의 복합재화를 의미하며, $\frac{1}{1-\rho}$ 는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함
-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음

$$\sum_t P_{c,t} C_t + \sum_t P_{i,t} I_t + \sum_t P_x E_t = \sum_t W_{ds,t} L_{ds,t} + \sum_t W_{ms,t} L_{ms,t} + \sum_t R_t K_t \quad (3)$$

46) 본 연구는 Ramsey 모형에 기초하고 있음

- 여기서 $P_{c,t}$ 는 소비재화 가격, $P_{i,t}$ 투자재화 가격, I_t 는 투자, P_x 는 환율, E_t 는 이민자의 해외 송금, $W_{ds,t}$ 는 국내 노동의 숙련도(비숙련과 숙련)에 따른 임금, $L_{ds,t}$ 는 숙련도로 구분되는 국내 노동, $W_{ms,t}$ 이민 노동의 숙련도에 따른 임금, $L_{sm,t}$ 숙련도로 구분되는 이민노동, R_k 는 자본의 수익률, K_t 는 자본을 의미함

▶ 생산부문

- 생산함수는 잠재성장률 전망에 주로 활용되는 콥더글라스 함수로 가정함

$$Y_t = A_t K_t^\alpha L_t^{1-\alpha} \quad (4)$$

- 여기서 Y_t 총공급(잠재성장률)을 의미하며, A_t 총요소생산성, K_t 자본, L_t 총노동을 의미함
- 노동은 국내노동과 이민노동은 다음과 같이 복합되어 총 노동공급이 결정됨

$$L_t = \left(\sum_s \alpha L_{s,t}^\rho \right)^{1/\rho}, \quad s = low, high \quad (5)$$

$$L_{s,t} = \left(\alpha L_{ds,t}^\rho + (1-\alpha) L_{ms,t}^\rho \right)^{1/\rho}, \quad s = low, high \quad (6)$$

- 위식은 총 노동공급은 국내노동(하첨자 d)와 이민노동(하첨자 m)노동은 국내 노동이 복합되어 결정되는데, 국내노동과 이민노동 모두 비숙련(*low*) 노동과 숙련(*high*) 노동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임

$$K_{t+1} = (1-\delta)K_t + I_t \quad (7)$$

- 다음 기의 자본저량(stock)은 감가상각(δ)를 제외한 현재의 자본과 투자로 형성됨

▶ 분석방법

- 기준시나리오 하에서는 이민노동과 송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일치하는 잠재성장률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함.
- 시나리오 하에서는 잠재성장률 1%p 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민 노동자가 모형 내에서 결정됨